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청사 유지 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4개소(보건소, 보건지소6, 보건진료소7)		
사업목적	주기적인 청사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17,195	485,754	405,354	80,400	411,404	6,0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17,195	485,754	405,354	80,400	411,404	6,0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11,404	
청사 유지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청소관리 인부임 · 기본급 89,680원*3명*251일 = 67,530 · 유급휴일수당 89,680원*3명*66일 = 17,757 ·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2회 = 3,000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14시간*3명*12월 = 8,475 · 피복비 240,000원*3명 = 720 ◎4대 보험료 97,482,000원*14% = 13,648	97,482	111,130
	201-01 사무관리비	◎청사 사무관리 · 청사관리용 기자재 구입 1,000,000원*2회 = 2,000 · 민원용 화장지 구입 390,000원*12월 = 4,680 · 청사관리용 청소용품 및 세제 구입 350,000원*12월 = 4,200 · 민원사무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800,000원*4회 = 3,200 · 폐기물처리비 1,200,000원*1회 = 1,200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31,300원*18대*12월 = 6,760 · 고속도로 통행료 20,800원*12월 = 250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1,060,000*12월 = 12,720 ◎민원실 사무관리 · 민원양식 제작비 75월*50,000매 = 3,750 ·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50,000원*12월 = 600 · 제증명발급용 행정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 100,000원*12월 = 1,200	22,290	41,53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진료대기실 민원용 일간지 등 구입비 50,000원*12월 = 600 ◎농협은행자동화기기 설치임대료 부가가치세 170,000원 = 170 ◎구급차, 의료지원 의약품 및 소모품 200,000원 = 200		
	201-02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시설물 유지관리 = 30,104 ◎청사 수목전정 1,500,000원*2회 = 3,000 ◎청사 보일러 및 팬코일 관리 12,000,000원 = 12,000 ◎전자경비시스템 운영 700,000원*12월 = 8,40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300,000원*12월 = 3,600 ◎전기안전관리 대행 300,000원*12월 = 3,600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300,000원*12월 = 3,600 ◎청사 의무소독비 350,000원*12회 = 4,200 ◎저수조 청소비 700,000원*2회 = 1,400 ◎GHP 및 EHP 냉난방기 유지보수 11,000,000원 = 11,000 ◎시설물안전점검 실시비 1,500,000원*2회 = 3,000 ◎청사 공공운영비 = 144,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6,000,000원*12월 = 72,000 · 도시가스요금 4,500,000원*12월 = 54,000 · 상하수도 요금 1,300,000원*12월 = 15,600 · 통신요금 120,000원*12월 = 1,440 · 교통유발부담금 1,200,000원*1회 = 1,200 ◎차량 유지관리비 320,000원*5대*12월 = 19,200 ◎공공우편물 발송비 200,000원*12월 = 2,400	249,744	
	401-01 시설비	◎보건소 별관 천장형 냉난방기 6,300,000원*1대 = 6,300	6,300	6,3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2,700,000원*1대 = 2,700	2,700	2,7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공공요금 인상 및 직원 증가에 따른 청사 공공운영비 증액
- 보건소 내소 민원인 및 건강취약계층(노약자, 임산부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본관 민원인 대기 공간에 공기청정기 구입 필요
- 보건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 청사관리(보안경비, 승강기, 전기안전, 소방관리 등) 용역
- 별관3층 방문보건팀 냉난방기 구입
 - 정수 배정 승인(회계과-24691(2022.09.1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일자	2022.11.					2022.08.12.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청사 운영 용역계약
- 2023.01. ~ 2023.12. : 청사 운영 및 청사 시설물 수시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8,338천원(집행율 82.3%)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34,238천원(집행율 97.9%) - 자산취득비(민원접수대, 교육실 음향장비 등) : 25,005천원(집행율 99.6%)
2021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97,055천원(집행율 92%)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9,161천원(집행율 90%)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41,064천원(집행율 99.7%) - 자산취득비(신규 직원 책상·의자·사물함, 교육실 음향장비 등) : 44,417천원(집행율 99%, 이월액 제외)
2022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86,287천원(집행율 80.5%) - 사무관리비(기자재, 소모품 등) : 36,994천원(집행율 83.5%) - 공공운영비(청사유지관리용역, 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45,828천원(집행율 76.3%) - 시설비(통신실 냉난방기) : 4,600천원(집행율 100%) - 자산취득비(냉난방기, 청소원 냉장고, 특수구급차) : 188,937천원(집행율 99.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10,860	297,581	-	13,279	
2021	617,195	421,667	181,637	13,891	
2022	667,391	561,885	-	105,50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4006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7.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보건소 본관, 별관		
사업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2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210,000	210,000	0	101,701	-108,299	
국비		140,000	140,000		41,133	-98,867	
도비		35,000	35,000		10,284	-24,716	
시비		35,000	35,000		50,284	15,2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1,701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자동혈압계 1,701,000원*1대 = 1,701 ◎ 보건사업차량(전기차) 50,000,000원*2대 = 10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민원인 및 내소 환자의 혈압측정시간 단축을 위한 스탠드형 전자자동혈압계 필요
- 기존 공용차량 브레이크 밀림 등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과 수리비 과다발생, 안전한 출장업무를 위해 교체 필요
- 전기자동차로 교체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을 높이고 대기환경개선과 유류비절감 효과도모
- 보건사업차량 지원한도액이 국비4천만원, 도비1천만원, 시비1천만원으로 자체재원 4천만원 추가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일자	2022.11.	-	-	-	-	2022.08.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장비구입 및 차량발주
- 2023.06. : 차량교체
- 2023.07. : 구매완료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미신청
2021	- 미신청
2022	- 디지털엑스선촬영장비(DR)구입 206,8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2021	-				
2022	210,000	206,850	-	3,15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7급 강민영	전화	4004
-----	-------	------------	-----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 계획 수립		
사업목적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480	35,000	39,560	-4,560	4,560	-3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80	35,000	39,560	-4,560	4,560	-3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60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배부 10,000원*100권*2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80,000원*16명*2회	= 2,000 = 2,56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 감액
- 제8기(‘23~‘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3년 시행계획 수립관련 계획서 제본 비용과 위원회 2회 운영(자문, 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 수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09.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연구용역 입찰
- 2022.10.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 연구용역 선정, 계약
- 2022.11.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단 구성
- 2023.01. :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2023.02. : 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2회)
- 2023.03. : 김포시의회 계획수립 보고 및 경기도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
2021	-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1회 -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책 제작
2022	-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설명회 및 담당자 교육 참석 - 수립활동 : 연구용역 입찰 및 선정, 계약, 지역사회 현황분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480	2,283	-	197	
2021	2,480	2,465	-	15	
2022	35,000	-	-	35,0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간호6급 최보라	전화	4003
-----	-------	------------	-----	----------	----	------

구내식당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보건소 본소 근무직원		
사업목적	내부 식당 운영으로 직원 복리후생 도모 및 질적 업무환경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1
	해당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0,604	56,740	56,740	0	54,955	-1,78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604	56,740	56,740	0	54,955	-1,7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955	
구내식당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급식실 전담인력 인부임 · 기본급 11,210원*6시간*2명*251일 = 33,765 · 유급휴일수당 11,210원*6시간*2명*66일 = 8,879 · 명절휴가비 375,000원*2명*2회 = 1,500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5시간*12월 = 1,009 ◎4대보험료 45,153,000원*14% = 6,322 ◎피복비 120,000원*2명*2회 = 480	45,153	51,955
	201-01 사무관리비	◎급식실 유지보수비 3,000,000원 = 3,000	3,000	3,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기존 기간제근로자 조리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근무시간 조정 (일 7시간→6시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구내식당 연간 운영계획 수립
 - 2023.01.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3.01.~2023.12. :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 2023.01.~2023.12. : 월간 구내식당 운영 결산 보고
 - 2023.12. : 식당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구내식당 운영 : 2021.04.~2021.12. - 시설현황 : 시설규모 202.5m ² / 좌석수 64 - 인력현황 : 3명 (영양사1/조리사1/조리원1) - 운영식수 : 26,787식(일 평균 142식)
2022	○ 구내식당 운영 : 2022.01.~2022.12. - 시설현황 : 시설규모 202.5m ² / 좌석수 64 - 인력현황 : 4명 (영양사1/조리사1/조리원2) - 운영식수 : 34,210식(일 평균 173식)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0,604	47,013	-	3,591	
2022	56,740	48,096	-	8,64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감 이지현	전화	4012
-----	-------	------------	-----	----------------	----	------

양촌읍보건지소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68번길 37
사업규모	양촌읍 보건지소 1개소		
사업목적	양촌읍 보건지소 진료환자 및 내소민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24조 제1항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773	8,250	18,020	-9,770	34,920	16,9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73	8,250	18,020	-9,770	34,920	16,9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920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제증명 검사업무 대행 인건비 · 방사선실, 검사실 대체인력 120,000원*2명*15일	= 3,600	3,600
	201-01 사무관리비	◎행정·의료장비 유지보수비 500,000원 ◎민원접수실 운영 ·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10,000원*12월 · 제증명 접수 서식 인쇄비 120원*5,000매 ◎검체 운송 수수료 27,500원*8회*12월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60,000원*12월	= 500 = 720 = 120 = 600 = 2,640 = 720	4,580
	201-02 공공운영비	◎청소관리비 550,000*12월	= 6,600	6,600
	307-01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 의약품 15,000원*21종*12월 ◎검사시약 40,000원*32종*12월 ◎X-ray 판독비 1,000원*50건*20회	= 3,780 = 15,360 = 1,000	20,14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운영비 증액
-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세부사업에 포함된 양촌읍 보건지소의 의료 및 구료비를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 세부사업에 통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업무 및 민원실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검사실 운영 : 검사실적 41,904건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검사 20,395건, 건강진단서 검사 189건, 발급 7,149건
2021	- 2020.12.17.부터 잠정 운영 중단(코로나19 업무)
2022	- 검사실 운영 : 검사실적 7,877건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검사 3,875건, 발급 1,76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528	5,521	-	2,007	
2021	1,773	1,773	-	0	
2022	8,250	3,220	-	5,0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양촌지소팀장 연은영	담당자	간호7급 구찬미	전화	4114
-----	-------	------------	-----	----------	----	------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0 외
사업규모	보건지소 6개소		
사업목적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24조 제1항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8,136	31,210	94,289	-63,079	59,179	-35,1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8,136	31,210	94,289	-63,079	59,179	-35,1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9,179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201-01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 관사 월세 (500,000원*12월*1개소)+(500,000원*9월*2개소) = 15,000 ◎관사 중개수수료 243,000원*3개소 = 729 ◎공기청정기, 비데, 정수기 임차료 150,000원*12월 = 1,800 ◎백신 냉장고 유지보수비 1,000,000원*6개소 = 6,000		23,529
	201-02 공공운영비	◎청소비 750,000원*5개소 = 3,750		3,750
	307-01 의료 및 구료비	◎일반진료 의약품(월곶면) 80,000원*15종*12월 = 14,400 ◎진료기자재 500,000원*5회 = 2,500		16,900
	406-01 기타자본이전	◎공중보건의 관사 보증금 5,000,000원*3개소 = 15,000		15,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월곶면 보건지소 처방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
- 보건지소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
-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가 사용할 관사 제공(임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업무 재개를 위하여 백신 냉장고 유지보수비(배터리, 냉매, 모터 등 교체), 청소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 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 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보건지소 운영
 - 2023.01.~2023.12. : 통진보건지소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2023.04.~2023.12. : 대곶, 하성보건지소 관사 임대계약 및 사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보건지소(6개소) 운영 : 진료실적 1,619건, 예방접종 실적 : 185건 - 검사실 운영(양촌) : 검사실적 41,904건 - 대곶보건지소 임대계약 및 사용 : '20.4.~12.
2021	- 보건지소(6개소) 운영 : 진료실적 291건 - 검사실 운영(양촌) : 검사실적 없음 - 대곶보건지소 임대계약 및 사용 : '21.1.~12.
2022	- 월곶면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 186건 - 통진보건지소 임대계약 및 사용 : '22.7.~12.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4,688	43,406		1,282	
2021	28,136	23,104		5,032	
2022	31,210	24,345		6,86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간호6급 최보라 간호7급 김희환	전화	4003 4006
-----	-------	------------	-----	----------------------	----	--------------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3. 2.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연명의료 결정 등록을 위한 보건소 이용 접근성 제고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제1항 ~ 제4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변경절차 등의 결과통보,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36,000	36,000	
국비		0				0	
도비		0			10,800	10,800	
시비		0			25,200	25,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6,000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연명의료등록사업 인부임 ·기본급 89,680원*1명*211일 = 18,923 ·유급휴일수당 89,680원*1명*54일 = 4,843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 = 500 ◎4대보험료 24,266,000원*14% = 3,398		27,664
	201-01 사무관리비	◎연명의료등록사업 홍보 현수막 등 제작 50,000원*20개 = 1,000 ◎연명의료등록사업 홍보물 등 제작 6,000원*1,006개 = 6,036		7,036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 pc 1,300,000원*1대 = 1,300		1,3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2023년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
-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등록,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과 홍보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0. : 2023년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 2022.11.25. : 연명의료결정 등록기관 승인
- 2022.12.~2022.12. : 사업담당자 교육이수
- 2023.02. : 상담인력 채용 및 교육이수
- 2023.03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개시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2021	-
2022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021					
20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6급 김지영	전화	4002
-----	-------	------------	-----	----------	----	------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외
사업규모	보건진료소 7개소(학운리,대벽리,송마리,성동리,개곡리,마조리,석탄리)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疫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05,562	205,010	200,210	4,800	195,600	-4,6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5,562	205,010	200,210	4,800	195,600	-4,6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95,600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450,000원*7개소 = 3,150 ◎수용비 400,000원*7개소 = 2,800 ◎보건진료소 운영 및 청소용품 등 구입 500,000원*7개소 = 3,500 ◎일차진료 관련 용지 제작 및 구입 300,000원*12월 = 3,600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 96,500원*7개소*12월 = 8,106	21,156	
	201-02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시설물 유지관리 2,800,000원*7개소 = 19,600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30,000원*7개소*12월 = 10,920 ◎청사 수목전정 400,000원*7개소 = 2,800 ◎청사 난방용 유류 구입 23,000,000원 = 23,000 ◎청사관리 용역 수수료 = 8,640 · 정화조 업무관리 대행 수수료 50,000원*7개소*12월 = 4,200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60,000원*7개소*2회 = 840 · 청사소독비 300,000원*12회 = 3,600 ◎청사 공공운영비 = 23,940 · 전기요금 200,000원*7개소*12월 = 16,800 · 상하수도 요금 30,000원*7개소*12월 = 2,520 · 통신(전화, 인터넷) 요금 55,000원*7개소*12월 = 4,620	88,9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307-01 의료및구료비	◎일차진료 의약품 등 구입 · 학운리보건진료소 7,100,000원 = 7,100 · 대벽리보건진료소 14,450,000원 = 14,450 · 송마리보건진료소 7,780,000원 = 7,780 · 성동리보건진료소 7,000,000원 = 7,000 · 개곡리보건진료소 15,830,000원 = 15,830 · 마조리보건진료소 18,670,000원 = 18,670 · 석탄리보건진료소 9,164,000원 = 9,164	79,994	79,994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기실 전용 혈압계(개곡리) 2,000,000원*1대 = 2,000 ◎방문보건용 이동식 혈압계(성동리, 석탄리) 300,000원*2대 = 600 ◎대기실 전용 소파(대벽리, 석탄리, 마조리) 350,000원*2개*3세트 = 2,100 ◎진료용 환자 의자(성동리) 100,000원*1개 = 100 ◎드레싱 카트(석탄리) 500,000원*1개 = 500 ◎사무용 의자(성동리) 250,000원*1개 = 250		5,5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진료소내부 구충·구서 살균소독작업으로 깨끗한 진료환경을 위한 청사소독비 증액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임차료 증액
-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비
-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및 청사 유지 용역비
- 내소 진료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
- 10년 이상 사용 노후 혈압계 교체(개곡리, 성동리) 및 신규 취득(석탄리)
- 8년 이상 사용 노후 가구 교체 및 신규 취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청사관리 용역(경비, 정화조, 청사소독) 계약 및 보건진료소 운영 월별집행
 - 2023.01.~2023.12. : 혈압계, 약포장기 구입·설치
 - 2023.01.~2023.12. : 진료용 가구, 대기실용 가구 구입·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 19,815천원(집행율 92.9%)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73,624천원(집행율 79.8%)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86,983천원(집행율 99.9%) - 자산취득비(냉장고, 청소기) : 2,692천원(집행율 88.5%)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 21,072천원(집행율 98%)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86,470천원(집행율 89%)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 86,182천원(집행율 99%)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75천원(집행율 95%)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청사운영 소모품): 10,115천원(집행율 45%)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64,161천원(집행율 74%) - 의료 및 구료비(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8,688천원(집행율 56%) -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94천원(집행율 99%)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03,606	183,115	-	20,491	
2021	205,562	194,199	-	11,363	
2022	205,010	130,259	-	74,75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간호8급 문슬기	전화	4006
-----	-------	------------	-----	----------	----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11 외 6개소
사업규모	보건진료소 7개소		
사업목적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600	5,600	5,600	0	5,6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00	5,600	5,600	0	5,6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보건진료소 의료 및 보건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	5,600	
		·학운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대백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송마리보건진료소	80,000원*15명*1회	=	1,200
		·성동리보건진료소	80,000원*4명*1회	=	320
		·개곡리보건진료소	80,000원*13명*1회	=	1,040
		·마조리보건진료소	80,000원*11명*1회	=	880
		·석탄리보건진료소	80,000원*5명*1회	=	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 연 1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각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위원 정비, 계획 수립
운영 개최 결과보고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2021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2022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연 1회/7개소, 4개 진료소 11월 운영협의회 개최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600	5,440	-	160	
2021	5,600	5,440	-	160	
2022	5,600	1,840	-	3,7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지영	담당자	보건진료7급 오유진외 6	전화	4238
-----	-------	------------	-----	---------------	----	------

의약업소 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의약관련 업소(의료기관 : 537개소, 약업소 : 600개소, 의료기기 : 1,025개소, 안경업소 등 107개소)		
사업목적	관내 의료기관등과의 상호협력 및 업무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1항/제25조제3항, 제59조제1항
	제33조(개설등)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59조(지도와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40조 제2항(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644	6,860	6,860	0	6,86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44	6,860	6,860	0	6,8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60	
의약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의약업소 신고증 인쇄 및 물품 구입 300,000원*3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수당 80,000원*11명*2회	= 900 = 1,760	2,660
	201-02 공공운영비	◎의약업소 발송 우편요금 2,480원*250개소*6회 ◎의약업소 지도단속용 휴대폰 요금 40,000원*1대*12월	= 3,720 = 480	4,200

□ 예산요구 사업내용

- 의약업소 지시·안내 사항 전달을 위한 우편물 발송
- 병원급 개설 허가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 요금 지급, 의약업소 신고증 등 물품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관리
- 2023.01.~2023.12.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운영(병원 개설허가시 수시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사무관리용품 구입 1,064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1,120천원
2021	- 사무관리용품 구입 1,760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2,116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2회(서면심의) 540천원
2022	- 사무관리용품 구입 180천원 - 우편요금 및 휴대폰 요금 지급 2,429천원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개최 2회(서면심의) 45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306	2,952	-	354	
2021	5,644	4,751	-	893	
2022	6,860	3,059	-	3,80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	전화	4017
-----	-------	------------	-----	----------	----	------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준공 후 15년 이상 노후된 의료기관 1개소		
사업목적	노후된 의료기관의 안전상태,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980	0	0	0	1,100	1,1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80	0	0	0	1,100	1,1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00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 실태 조사	401-01 시설비	◎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1,100,000원*1개소	= 1,1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상태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도모
- 2개소에서 의료기관 폐업으로 1개소 축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1.01.~2021.03. : 실태조사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1.04.~2021.08. : 실태조사 용역 착수 및 완료
- 2021.09.~2021.10.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2023.01.~2023.03. : 실태조사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3.04.~2023.08. : 실태조사 용역 착수 및 완료
- 2023.09.~2023.12. :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해당없음
2021	- 실태조사 : 2개소 완료 (한별정신병원, 김포한누리 병원)
2022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1,980	1,980	-	0	
2022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	전화	4017
-----	-------	------------	-----	----------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김포시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제5호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제14조 제1항 제21조 제5호
	해당조례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제1항 제2호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홍보·지원 등) 제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2,000	10,400	8,000	2,400	10,400	2,400	
국비	6,000	5,200	4,000	1,200	5,200	1,200	
도비		0				0	
시비	6,000	5,200	4,000	1,200	5,200	1,2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4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응급처치 교육 : 25,000원*416명	= 10,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 지침(‘21.7. 개정)」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반드시 4시간 과정 이수하여야 함에 따른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교육시간 및 교육단가 상승

- 심정지환자 발생 시 5분 이내에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법정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
- 일반 시민들의 응급처치 교육 요구도 증가로 인하여 법정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일반 시민 까지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2. : 2023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및 응급장비 관리 계획
- 2023.03. : 김포교육지원청, 보육과, 읍·면·동 교육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
- 2023.04.~2023.09. : 신청·접수 및 교육 실시
- 2023.10. : 교육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대면)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9회 330명
2021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대면)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23회 628명
2022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대면 및 대면 병행) · 내용 : 법정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실적 : 14회 456명 (비대면 5회 90명 및 대면 9회 36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6,600	6,600	-	-	
2021	12,000	12,000	-	-	
2022	10,400	10,4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9급 장은정	전화	4027
-----	-------	------------	-----	----------	----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1조 제6호
	해당조례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제6호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제1항 제1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800	5,500	5,500	0	5,500	0	
국비	2,400	2,750	2,750		2,750	0	
도비		0				0	
시비	2,400	2,750	2,750		2,75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동심장충격기 2,450,000*2대 •패드·배터리 200,000원*3개	= 5,500 = 4,900 = 6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의무대상 제외 시설 중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가능한 취약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에 따라 패드·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거나 실제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사용하였으나 예산 마련 등의 문제로 즉시 교체가 어려운 장비 정비에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2. : 2023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및 응급장비 관리 계획
- 2023.03.~2023.04. : 지원 대상 선정
- 2023.05.~2023.09. : 자동심장충격기 및 패드·배터리 보급
- 2023.01.~2023.12.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2021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내용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비의무 자율 설치기관의 응급장비 보급 지원 · 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 2대 (종합사회복지관 1대, 김포시청 1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지원 - 1개 (중봉도서관 1개)
2022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 내용 :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비의무 자율 설치기관의 응급장비 보급 지원 · 실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 2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1대, 솔터축구장 1대)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지원 - 3개 (김포시생활체육관 2개, 경기도학생교육원김포학생야영장 1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4,800	4,800	-	-	
2022	5,500	5,5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9급 장은정	전화	4027
-----	-------	------------	-----	----------	----	------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재난 등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의료지원 체계 확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1,3,7의2호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과의 장의 재난예방조치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000	2,000	2,000		2,000	0	
국비	1,400	1,400	1,400		1,400	0	
도비	600	600	600		600	0	
시비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 2,00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02. : 추진계획수립
- 2023.05.~2023.11. : 재난현장 매뉴얼 정비
- 2023.04.~2023.10. : 재난대비 응급 물품 구입
- 2023.03.~2023.09. : 현장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교육 훈련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재난의료 물품구입 · 야외용 매트 : 20개/700천원 · 신속대응 상황판 및 핫팩 구입 : 1,300천원
2021	- 재난의료 물품구입 : 2,000천원 · 재난응급용 가방, 의료용 산소공급기 등
2022	- 재난의료물품 구입 · 신속대응용 의료용품, 재난대비 헬멧, 재난 대비 화이트보드 제작등 : 1,51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000	2,000	-	-	
2021	2,000	2,000	-	-	
2022	2,000	1,516	-	484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간호6급 임은영	전화	4017
-----	-------	------------	-----	----------	----	------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7, 1층(걸포동)
사업규모	1개소(한사랑약국)		
사업목적	심야시간(22시~익일1시)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4,500	34,500	34,500	0	34,500	0	
국비		0				0	
도비	10,350	10,350	10,350		10,350	0	
시비	24,150	24,150	24,150		24,15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500	
공공심야약국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1,100원*1,500개	= 1,650	
	301-12 기타보상금	·공공심야약국 운영경비지원 30,000원*3시간*365일*1개소	= 32,8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심야시간 대 복약지도가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경비 지속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약체결 및 계획수립
- 2023.01.~2023.12. : 공공심야약국 월별 운영비 지원
- 2023.01.~2023.12. : 공공심야약국 운영 상·하반기 1회점검
- 2023.12. : 공공심야약국 운영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운영기관 : 2개소(한사랑약국, 통진온누리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총 2,078건(한사랑약국 1,458건, 통진온누리약국 620건) -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장바구니 1,675개, 간판 5개
2021	- 운영기관 : 1개소(한사랑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2,237건 -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물티슈 1,000개, 볼펜 1,100개
2022	- 운영기관 : 1개소(한사랑약국) - 의약품판매 및 전화상담 실적 : 2,403건 - 공공심야약국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대나무 칫솔 1,000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69,000	69,000	-	-	
2021	34,500	34,500	-	-	
2022	34,500	26,220	-	8,28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8급 최은빈	전화	4018
-----	-------	------------	-----	----------	----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기본추진계획 수립
- 2023.03.~2023.04. : 방문복약지도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및 선정
- 2023.05.~2023.11. : 방문복약지도 서비스 및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실시
- 2023.12. : 대상자 만족도 및 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복약지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총2회(방문1회, 전화상담 1회) 복약지도 · 실적 : 1차 50명, 2차 63명 -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의약품 수거 포스터 500개, 폐의약품 수거 및 손세정제 주의 배너 141개, 황사마스크 1,000개 ※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전문약사 양성 미실시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복약지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총2회(방문1회, 전화상담 2회) 복약지도 · 실적 : 1차 39명, 2차 39명, 3차 39명 -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복약지도 접자카드 2,000부, 손소독제 3,000개 ※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전문약사 양성 미실시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복약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다제약물 복용자 50명 대상으로 총 3회(방문3회) 복약지도 · 실적 : 1차 50명, 2차 47명, 3차 46명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등 교육 · 실적 : 경로당 3회 59명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관련 전문약사 양성교육 수료 : 35명 -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사업 관련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및 설치 : 16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0,000	16,020	-	3,980	
2021	20,000	11,720	-	8,280	
2022	20,000	15,032	-	4,96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품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보건8급 최은빈	전화	4018
-----	-------	-------------	-----	----------	----	------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관내 김포시민		
사업목적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5,000	5,000	0	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5,000	5,000		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헌혈장려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헌혈홍보 현수막 등 제작 50,000원*20개 ◎헌혈장려 홍보물 등 제작 4,000원*1,000개	= 1,000 = 4,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헌혈 권장 홍보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혈액 수급에 대한 필요성 인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현혈장려 계획수립
- 2023.01. ~ 2023.12. : 현혈장려사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김포시 현혈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9.29)
2021	- 현혈장려 홍보 (홈페이지, 전광판)
2022	- 현혈 현수막 제작 8개/440천원 - 현혈 홍보물 제작 1,140개/4,56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	-	-	-	
2022	5,000	5,000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장 김춘숙	담당자	의료기술6급 김춘숙	전화	4016
-----	-------	------------	-----	------------	----	------

국가암 관리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50%,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목적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 무료검진 홍보로 수검률 향상 및 치료율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5,500	26,260	26,260	0	26,860	6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500	26,260	26,260	0	26,860	6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6,860	
국가 암	201-01 사무관리비	◎암관리사업 추진 홍보 -대장암검진 채변통 구입 150원*45,000개 -홍보배너 및 현수막 70,000원*13개	= 7,660 = 6,750 = 910	7,660
	201-02 공공운영비	◎검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40원*30,000매	=	19,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및 배너 홍보
-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배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3. : 추진계획수립
- 2023.04.~2023.09.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우편발송
- 2023.03.~2023.12. : 읍·면·동, 공공기관 보관함, 홍보 활동 시 채변통 배부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활용 암검진 수검독려 전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30,162 명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40,154명 - 채변통 배부: 25,200개
2021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10,662건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28,794건 - 채변통배부 : 29,742
2022	- 암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29,190건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8,790건 - 채변통배부 : 21,265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1,850	21,850	-	0	
2021	25,500	25,500	-	0	
2022	26,260	25,438	-	822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전화	4101
-----	-------	------------	-----	------------	----	------

국가암 관리(암검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사업목적	- 저소득층 국가 암검진을 통하여 조기 암 발견 및 치료율 향상과 사망률 감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1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22,200	482,720	482,720	0	493,240	10,520	
국비	261,100	241,360	241,360		246,620	5,260	
도비	39,165	36,200	36,200		36,993	793	
시비	221,935	205,160	205,160		209,627	4,46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93,240	
국가 암관리 (암검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인건비 2명 · 기본급 : 56,050원*170일*2명 · 유급휴일수당 : 56,050원*45주*2명 · 4대 보험료 : 24,102,000원*14%	= 27,477 = 19,057 = 5,045 = 3,375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 암검진비	= 465,763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저소득층 대상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검진비 지급
-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암검진 미지급분 증가 해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3. : 추진계획수립
- 2023.04. : 기간제근로자 2명채용
- 2023.03.~2023.12. :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 수검독려 전화 및 암검진사업 홍보
- 2023.01.~2023.12. : 국가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년	-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617,852천원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40,154명 - 암검진 수검실적 : 94,937건
2021년	-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496,282천원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39,456명 - 암검진 수검실적 : 107,356건
2022년	- 암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456,243천원 - 암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8,790명 - 암검진 수검실적 : 58,43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640,000	639,206	0	794	
2021	522,200	521,692	0	508	
2022	482,720	478,490	0	4,23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전화	4101
-----	-------	------------	-----	------------	----	------

암환자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암환자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진단부터 연속 지원함으로써 치료율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6항 제10조 제1항~제5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80,000	573,800	573,800	0	573,800	0	
국비	290,000	0				0	
도비	43,500	329,900	329,900		329,900	0	
시비	246,500	243,900	243,900		243,9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3,800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73,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암 검진(2021.06.30일까지)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가 폐암 진단(2021.06.30일까지)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암환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속 3년간 지원
 - 등록 신청일 기준 소아암(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에게 연간 최대 2,000만원(기타 암) ~ 3,000만원(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시)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만 18세까지임
-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기준 적합 시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암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및 등록
- 2023.01.~2023.12. : 소아 암환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정 통보
- 2023.01.~2023.12. : 암환자 의료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암환자의료비 지원 : 236명 361,000천원 건강보험(5대암종)135명 163,951천원, 의료급여수급자 40명 36,039천원, 폐암 50명 69,768천원, 소아암 11명 91,242천원
2021	- 암환자의료비 지원 : 335명 580,000천원 건강보험(5대암종)193명 242,078천원, 의료급여수급자 55명 74,020천원, 폐암 67명 108,232천원, 소아암 20명 155,670천원
2022	- 암환자의료비 지원 : 194명 302,629천원 건강보험(5대암종)104명 114,008천원, 의료급여수급자 48명 79,082천원, 폐암 31명 35,317천원, 소아암 11명 74,22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61,000	361,000			
2021	580,000	580,000			
2022	573,800	302,629		271,17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보건7급 이명옥	전화	4103
-----	-------	------------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147개 희귀질환		
사업목적	- 진단의 어려움과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8조 제1항~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20,000	770,000	770,000	0	770,000	0	
국비	360,000	385,000	385,000		385,000	0	
도비		0				0	
시비	360,000	385,000	385,000		38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70,0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진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77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수시 및 상·하반기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적합 시 의료비 등 지원
- 희귀질환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1,147개 질환), 간병비(97개 질환),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신청 접수, 등록 및 소득·재산 수시 조사
- 2023.01.~2023.12.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수시)
- 2023.04.~2023.06.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상반기)
- 2023.10.~2023.12.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하반기)
- 2023.01.~2023.12. : 희귀질환자 결정통보
- 2023.01.~2023.1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분기별 예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 141명 / 6,253건
2021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 147명 / 7,345건
2022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 142명 / 6,86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예산액)
2020	793,922	675,451	118,471	-	792,000
2021	838,843	689,749	149,094	-	720,000
2022	919,094	644,679	-	274,415	770,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보건7급 이명옥	전화	4103
-----	-------	------------	-----	----------	----	------

진료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보건소(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사업목적	보건소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증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가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3,236	20,220	23,420	-3,200	23,257	-16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236	20,220	23,420	-3,200	23,257	-1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257	
진료사업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진료실·물리치료실·방사선실 대체인력 120,000원*3명*17일 =	6,120	6,120
	201-01 사무관리비	◎방사선실 운영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16,500원*2개소*4회 = 132 ·방사선실 검진가운 70,000원*4벌 = 280 ·방사선실 공기청정기 필터 152,000원*2개 = 304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수수료 227,000원*1회 = 227 ◎물리치료실 운영 ·물리치료 장비 유지비 150,000원*10종 = 1,500 ·물리치료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5,000원*1대*12월 = 300 ◎진료실 운영 ·진료업무 소모품 구입 100,000원 = 100 ·진료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25,000원*1대*12월 = 300	1,800	3,143
	201-02 공공운영비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비 396,000원*2개소*12월 = 9,504 ◎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비 660,000원*2회 = 1,320 ◎방사선촬영장비 유지보수비 1,100,000원*1회 = 1,100	9,504	11,924
	307-01 의료및구료비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 150,000원*10종 = 1,500 ◎진료실 기자재 구입 20,000원*8종 = 160 ◎진료실 의약품 구입 20,000원*3종 = 60	1,500	1,72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선실 진공청소기 350,000원*1대 =	350	3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내소 환자 진료를 위한 기자재, 의약품 구입 필요
- 진료실 내원 환자 진료 및 적성검사, 성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진료실 담당자의 교육 및 휴가 시 전문적인 대체인력 필요
- 보건소 내소 민원인을 위한 자동 혈압계 비치 필요(신규 취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추진계획수립
- 2023.01.~2023.12. :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대체인력 업무 대행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보수(분기별)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방화벽 유지보수(반기별)
진료실 대면진료 및 운전면허적성검사
주 2회 요통교실 및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의 날 운영
- 2023.06. :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
- 2023.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진료실적 7,990건, 물리치료 1,008명 - 흉부 방사선 촬영 6,346건, 업무대행 2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9,217건 - 뇌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 10회 54명 - 요통재활치료 : 10회 66명
2021	- 진료실적 6,214건 - 흉부 방사선 촬영 483건, 업무대행 18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516건
2022	- 진료실적 5,215건 - 흉부 방사선 촬영 11,428건, 업무대행 25회 -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 11,50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6,182	23,149	-	3,033	
2021	23,236	22,120	-	1,116	
2022	20,220	11,495	-	8,72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7급 김재영 간호8급 김예슬	전화	4104 4105
-----	-------	------------	-----	------------------------	----	--------------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만66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목적	-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1항~제2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0,700	40,300	40,300	0	40,800	500	
국비	32,560	32,240	32,240		32,640	400	
도비	1,221	1,209	1,209		1,224	15	
시비	6,919	6,851	6,851		6,936	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800	
일반검진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 40,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2023년 예산액 증액 내시
-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 구분 실시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항목은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문진 및 진찰 등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만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3. : 추진계획
- 2023.03.~2023.07. :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일반검진 안내문 발송
- 2023.01.~2023.12. : 일반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
- 2023.04.~2023.11. : 일반검진 수검독려 전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예탁 : 37,995천원 -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498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424건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354건
20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예탁 : 40,700천원 -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398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590건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462건
2022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비 공단예탁 : 40,300천원 - 일반건강검진 수검 전화 독려 : 1,232명 - 일반건강검진 수검실적 : 366건 -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실적 : 33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7,995	37,995	0	0	
2021	40,700	40,700	0	0	
2022	40,300	40,300	0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행정과	진료검진팀장 이석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이석창	전화	4101
-----	-------	------------	-----	------------	----	------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활동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감염병 조기감지 및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1호
		제64조(특별자치도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760	80,608	80,608	0	92,856	12,248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4,760	80,608	80,608	0	92,856	12,248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856	
감염병 예방활동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7개월) · 기본급 89,680원*4명*148일 = 53,091 · 유급휴일수당 89,680원*4명*38일 = 13,632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2시간*4명*26일 = 3,498 · 연차유급휴가수당 89,680원*4명*7월 = 2,512 · 명절휴가비 500,000원*4명*1회 = 2,000 ◎ 4대보험료 74,733,000*14% = 10,463	74,733	85,196
	201-01 사무관리비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1,000원*5,000개 = 5,000	5,000	5,000
	201-02 공공운영비	◎ 감염병 예방 휴대폰 요금 55,000원*1대*12월 = 660 ◎ 감염병 예방 홍보용 우편요금 500원*3,000통 = 1,500	660 1,500	2,160
	301-14 기타보상금	◎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강사비 250,000원*2회 = 500	500	5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4명
-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단지 및 홍보물 제작
-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실시
- 감염병 대비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른 대응
- 코로나19 확진자 재유행 발생으로 긴급한 예산 투입 필요 할 경우 예비비 사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02. : 감염병 예방 관리 기본계획 수립
 - 2023.01. : 2023년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2023.04. ~ 2023.10.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지정 및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 2023.04.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현수막, 보관용 상자, 서식용지 제작 등) - 올바른 손씻기 조기교육 사업추진용 홍보물 구입(손소독제, 살균소독수) - 선별진료소 및 검사실 소모물품(난방 등유 등 구입) - 코로나19 역학조사 3,124건
2021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 강사비 - 감염병 예방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 - 코로나19 확진자 6,380명
2022	- 감염병 홍보용 공문 발송 우편요금 등 - 감염병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 -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손소독티슈, 마스크) -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실시(1회/38명) - 코로나19 확진자 260,507명(22.10.31.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2,855	10,116	-	2,739	
2021	4,760	4,236	-	524	
2022	80,608	74,409	-	6,19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보건7급 최숙경 간호8급 백서윤	전화	4022 4023
-----	--------	-------------	-----	----------------------	----	--------------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4개소(해맑은비뇨기과의원, 아이민산부인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민흥기안과의원)		
사업목적	주요 감염병 발생추이 관찰, 유행확인 및 감시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4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880	5,880	5,880	0	5,880	0	
국비	2,940	2,940	2,940	0	2,940	0	
도비	882	882	882	0	882	0	
시비	2,058	2,058	2,058	0	2,058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880	
표본감시 운영경비	301-14 기타보상금	◎수족구·인플루엔자 감시운영경비 120,000원*12개월*1개소	= 1,440	5,880
		◎인플루엔자 실험실감시운영경비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급성설사질환 감시운영경비 140,000원*12개월*1개소	= 1,680	
		◎성매개감염병 감시운영경비 30,000원*12개월*2개소	= 720	
		◎안과감염병 감시운영경비 30,000원*12개월*1개소	= 36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주요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안과 감염병 등)의 발생 문제 크기를 예측하고 질병발생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운영비 지급
- 집단발생 유행을 확인하고 홍보 및 교육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 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3.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운영경비 지급
- 2023. 01. ~ 12. :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매주 화요일 질병관리본부 웹(<https://is.cdc.go.kr>)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안과감염병 54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52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153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1,078명 표본감시 보고
2021	- 안과감염병 31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42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7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2,330명 표본감시 보고
2022	- 안과감염병 36명 표본감시 보고 - 성매개감염병 20명 표본감시 보고 -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89명 표본감시 보고 -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장관감염증 33,404명 표본감시 보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880	5,880	-	-	
2021	5,880	5,880	-	-	
2022	5,880	5,88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보건7급 최숙경	전화	4022
-----	--------	-------------	-----	----------	----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사업목적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4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0,000	20,000	20,000	0	18,000	-2,000	
국비	20,000	20,000	20,000	0	18,000	-2,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9,000,000원*2개소	= 18,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의료관련감염병(항생제내성균 4종)에 대한 표본감시 활동 및 예방관리 참여병원 운영비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의료기관 :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 의료관련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2022년 1개소 당 10,000천원에서 2023년 9,000천원으로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 03. : 표본감시기관 신청서 제출
- 2023.03.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서 제출
- 2023.04. :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급
- 2023.12.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22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1,878건
2021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23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52회/2,375건
2022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 -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관리 원내감염관리 교육 및 회의 : 13회 - 의료관련감염병 감염관리 및 감시 : 44회/2,78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4,000	14,000	-	-	
2021	20,000	20,000	-	-	
2022	20,000	20,000	-	-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보건7급 최숙경	전화	4022
-----	--------	-------------	-----	----------	----	------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지역주민, 김포시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사업목적	1. 감염병질환 진단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준비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감염성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예방가능한 질환의 사전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 1항 5호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억제내성 감시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77,783	76,730	76,730	0	80,420	3,69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177,783	76,730	76,730	0	80,420	3,69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0,420	
검사실 운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검사실 운영 · 검사장비 유지비 450,000원*12월 = 5,400 · 폐수처리 수수료 2,000,000원*1회 = 2,000 · 감염성질환 검체 운송 수수료 45,000원*42회 = 1,890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운영 · 안내문 서식 제작 200,000원*2회 = 400 · 홍보물 구입 5,900원*1,200개 = 7,080 · 민원인용 종이가방 구입 1,200원*1,000개 = 1,200	9,290 5,400 2,000 1,890 8,680	17,970
	307-01 의료및구료비	◎검사실 시약 등 구입 · 검사용소모품 20,000원*40종*10회 = 8,000 · 세균검사시약 60,000원*45종*6회 = 16,200 · 기타검사시약 150,000원*20종*3회 = 9,000 ◎예비부부·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시약 구입 · 면역검사용시약 170,000원*15종*5회 = 12,750 · 생화학검사용시약 110,000원*30종*5회 = 16,500	33,200 8,000 16,200 9,000 29,250 12,750 16,500	62,4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감염병 등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임상검사 진단시약 구입
- 임상검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위한 검사 장비 유지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감염병진단검사 및 건강관리사업 계획수립
- 2023.01. ~ 2023.12. : 검사실 운영 및 건강관리 검사
- 2023.02. : 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및 사업 홍보
- 2023.12. :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년	- 건강진단결과서 : 4,687건 - 건강진단서 : 318건 - 기타임상검사 : 48,780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 793명
2021	- 건강진단결과서 : 507건 - 건강진단서 : 9건 - 기타임상검사 : 46,467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 989명
2022	- 건강진단결과서 : 10,367건 - 건강진단서 : 317건 - 기타임상검사 : 21,801건 -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 : 75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30,470	218,189	-	12,281	
2021	177,783	171,948	-	5,835	
2022	76,730	63,697	-	13,03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9급 권다인 의료기술9급 이혜림	전화	4032 4028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사업기간	2023. 1. ~ 2023. 4.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보건소 본관, 별관		
사업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24조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88,500	88,500	
국비	0	0	0	0	59,000	59,000	
도비	0	0	0	0	14,750	14,750	
시비	0	0	0	0	14,750	14,75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8,500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동혈액분석기 80,000,000원*1대 ◎ 자동요분석기 8,500,000원*1대	= 80,000 = 8,5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의료용 자동혈액분석기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오작동으로 장비교체 필요
 - ※ 교체물품 : 의료용 자동혈액분석기 (구입일 2012.06. / 내구연한 10년 / 검사항목 : 혈구검사)
- 민원인 소변검사 시 육안판독의 한계로 검사결과 정확도를 위한 자동요분석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감염병 및 진단검사 계획수립
- 2023.02 : 장비 구매 계약심사 의뢰
- 2023.02 ~ 2023.04 : 장비 구입관련 공고 및 구입, 시범가동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9급 권다인	전화	4032
-----	--------	-------------	-----	------------	----	------

공수병 예방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교상환자 4명		
사업목적	교상환자 발생 시 백신 비용 지원에 의한 신속한 대처로 공수병환자 발생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000	1,000	1,000	0	1,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200	200	200	0	200	0	
시비	800	800	800	0	80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공수병 예방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 공수병 교상환자 백신비 등 지원 250,000원 * 4명	= 1,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시 백신비 지원으로 공수병 환자 발생 방지
- 해당 동물이 광견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 및 도주 한 경우 공수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 글로블린 접종 비용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광견병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로부터 교상된 경우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 비용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교상환자 백신비 지원 : 2명
2021	- 교상환자 백신비 지원 : 1명
2022	- 교상환자 백신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지원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000	189	-	811	
2021	1,000	95	-	905	
2022	1,000	455	-	54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6급 김효영	전화	4117
-----	--------	-------------	-----	----------	----	------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생물테러대비 초동대응 요원의 역량강화 훈련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5호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3,200	3,200	0	7,240	4,040	
국비	0	1,600	1,600	0	3,620	2,02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1,600	1,600	0	3,620	2,02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40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기호흡기 구입 · 공기호흡기 3,620,000원 * 2개	= 7,24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생물테러 대비·대응 공기호흡기 사용기한 경과로 출동용 공기호흡기 신규 구입
- 경기도 질병정책과 38249(2022.10.24.)호 「'23년도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2.~2023.06. : 생물테러 대비·대응 출동용 공기호흡기 신규 구입
- 2023.01.~2023.12. : 생물테러 대비·대응 비축물자 물품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코로나19로 미실시
2021	- 코로나19로 미실시
2022	-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실시 : 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
2021	-	-	-	-	-
2022	3,200	2,900	-	3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장 고미영	담당자	보건6급 함문선	전화	4067
-----	--------	-------------	-----	----------	----	------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감염병 조기감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173,396	972,629	2,197,040	-1,224,411	562,565	-1,634,475	
국비	0	0	0	0	0	0	
도비	1,358,005	0	0	0	0	0	
시비	3,815,391	972,629	2,197,040	-1,224,411	562,565	-1,634,475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62,565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12개월)	=	218,772	426,653
		· 기본급 89,680원*6명*251일	=	135,059	
		· 유급휴일수당 89,680원*6명*66일	=	35,514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6시간*8명*48일	=	38,742	
		· 연차유급휴가수당 89,680원*6명*12월	=	6,457	
		· 명절휴가비 500,000원*6명*1회	=	3,000	
		◎ 4대보험료 218,770,080원*14%	=	30,629	
		◎ 코로나19대응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12개월)	=	155,484	
		· 기본급 128,000원*3명*251일	=	96,384	
		· 유급휴일수당 128,000원*3명*66일	=	25,344	
		· 시간외근무수당 24,000원*8시간*3명*48일	=	27,648	
		· 연차유급휴가수당 128,000원*3명*12월	=	4,608	
		· 명절휴가비 500,000원*3명*1회	=	1,500	
◎ 4대보험료 155,484,000원*14%	=	21,768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201-01 사무관리비	◎ 감염병 예방 홍보 관리용 물품 등 구입 · 안내문 제작 120원*5종*12,000개 = 7,200 · 종이가방 등 제작비 1,000원*15,000개 = 15,000 · 홍보물 구입 4,000원*6,000개 = 24,000 ◎ 신종 감염병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13,000원*210박스*12월 = 32,760 ◎ 신종 감염병 대응 비상근무자 급식비 8,000원*312명*12월 = 29,952	46,200	108,912
	206-01 재료비	◎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용 살균 소독제 등 4,500원*6,000개 = 27,000	27,000	27,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9명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인한 급식비 감액
- 확진자 구호물품 지급 중단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감액
- 신종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물품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2023.12. :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2023.01.~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
 - 2023.01.~2023.12. :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459명 - 자가격리자: 10,578명(확진자 밀접접촉자/3,977명, 해외입국자/6,601명) -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426명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1,806건, 격리폐기물 46건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6,380명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2,422명 - 접촉자 관리 23,102명, 해외입국자 관리 7,569명, 공동격리자 관리 2,049명 -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348명 - 전원(병원): 105명, 전원(생활치료센터): 12명, 7(입소)+3일(격리) 관리 180명 - 병상대기자 관리 419명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3,403건, 격리폐기물 933건 -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 9명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260,507명(22.10.31.기준)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 245,755명(집중관리군: 20,809명/총누계: 248,177명) - 접촉자 관리 2,990명(누계:30,069명), 해외입국자 관리 4,126명(누계:18,296명), 공동격리자 관리 : 3,007명(누계:5,056명) - 해외입국자 PCR검사 안내 및 추적관리: 36,784명 - 해외입국 임시생활시설운영: 59명(누계:833명) - 전원(병원): 1,529명, 전원(생활치료센터): 138명, 7(입소)+3일(격리) : 52명 -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 : 12,045명,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운영 : 29,671건 - 먹는치료제 투약관리 :6,362명 -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 8,889가구 - 코로나1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확보: 136개소, 원스톱진료기관 확보:100개소,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확보: 37개소 -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 운영:61,213건(시청 행정안내센터:37,558건) - 코로나19 취약계층(독거노인) 건강상담 관리: 1,642명 - 코로나19 대응 인력채용 : 12명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 역학조사 4명, 선별진료소 8명 (‘22.8~12)) - 의료폐기물 : 일반폐기물 6,305건, 격리의료폐기물 28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5,173,396	3,790,788	955,996	1,382,608	
2022	1,928,625	1,662,506	-	266,11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감염병대응팀장 고미영	담당자	보건7급 최숙경 간호8급 백서운 의료기술8급 김혜인	전화	4022 4023 4068
-----	--------	----------------------------	-----	------------------------------------	----	----------------------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1개소		
사업목적	코로나19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41,080	137,942	137,942	0	136,568	-1,374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141,080	137,942	137,942	0	136,568	-1,374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6,568	
선별진료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선별진료소 운영관리 소모품 2,000,000원*12월 ◎코로나19 물품 및 검체 운송 수수료 264,000원*12월	= 24,000 = 3,168	27,168
	201-02 공공운영비	◎선별진료소 난방비 650,000원*6월	= 3,900	3,900
	206-01 재료비	◎신종감염병 검체채취용 소모품 · 손균스프레이 4,300원*200개*12월 · 손소독제 2,700원*150개*12월 · 제균티슈 4,000원*90개*12월 · 선별진료소 채취장갑 3,000,000원*12월 ◎레벨D 보호복 세트 7,000원*3,500개 ◎수술용 가운 5,000원*5,100개	= 55,500 = 10,320 = 4,860 = 4,320 = 36,000 = 24,500 = 25,500	105,5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검체 운송 수수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12. :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 41,114건
2021	-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 404,043건
2022	- 선별진료소 검사건수 : 377,712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1	141,080	140,017	-	1,063	
2022	137,942	102,175	-	35,767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담당자	의료기술8급 이지혜	전화	4106
-----	--------	-------------	-----	------------	----	------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임규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39,077	604,191	579,191	25,000	630,792	51,601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639,077	604,191	579,191	25,000	630,792	51,601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30,792	
취약지역 방역소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취약지역 방역소독 인부임 · 기본급 89,680원*1명*170일 = 15,246 · 유급휴일수당 89,680원*1명*45일 = 4,036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45시간*1명*5월 = 3,783 ·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4대보험료 23,565,000원*14% = 3,300 ◎방역소독원 피복비 240,000*1명 = 240	23,565	27,105
	201-01 사무관리비	◎방역소독용 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 = 10,000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 8,000원*6명*90일 = 4,320 ◎해충기피제함 임대 및 관리비 700,000원*7월 = 4,900 ◎DMS 소모품 교체 및 정비 110,000원*12대*7월 = 9,240 ◎해충퇴치기 유지보수비 20,000원*296대 = 5,920	10,000	34,380
	201-02 공공운영비	◎보건소 방역소독용 유류비 56,000원*6대*12월 = 4,032 ◎방역용 휴대폰 요금 62,490원*6대*12월 = 4,500 ◎방역차량 감시용 GPS 통신 유지비 100,500원*21대*6월 = 12,663	4,032	21,195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206-01 재료비	◎방역소독용 약품 구입 = 105,000 · 살충제 30,000원*1,000ℓ = 30,000 · 유충구제제 35,000원*2,000kg = 70,000 · 살균소독제 10,000원*500통 = 5,000 ◎방역 보호복 10,000원*1,000개 = 10,000		115,000
	307-05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 방역소독 273,100원*95일*16권역 = 415,112		415,112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해충퇴치기 900,000원*20대 = 18,000		18,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신도시 개발에 따른 나대지, 우수지, 물웅덩이 등 위생해충 서식지 증가로 방역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말라리아 등 각종 매개체감염병 질환에 대한 적극 방역 필요
- 해충 발생이 많은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16개 권역 민간위탁용역 방역소독비
- 방역소독용 장비의 노후로 유지비와 소모품 구입비 증액
-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및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 교체 필요(설치시기 2012년, 내구연한 7년)
- 기간제근로자 1명을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 인건비로 편성하여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2.11.	-	-	-	-	-	-	-	2022.10.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계획 수립
 - 2023.01.~2023.04. : 취약지역 해빙기 방역소독
 - 2023.03. : 기간제근로자 인력채용(1명)
 - 2023.04.~2023.05. : 민간위탁 방역소독 용역 계약
 - 2023.05.~2023.10. : 하절기 주·야간 집중 방역소독, 민간위탁 방역소독
 - 2023.11.~2023.12. : 취약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방역소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해빙기방역 실시 : 120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347건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520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4,680ℓ 사용 - 해충퇴치기 26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해빙기방역 실시 : 120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365건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504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4,615ℓ 사용 - 해충퇴치기 26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해빙기방역 실시 : 62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888건 - 민간위탁 방역소독 16개 권역 하절기 집중 방역 실시 : 1,488건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5,851ℓ 사용 - 해충퇴치기 260대, 해충기피제함 15대 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42,464	691,772	-	50,692	
2021	639,077	590,222	-	48,855	
2022	604,191	458,596	-	145,595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8급 이인정	전화	4119
-----	--------	-------------	-----	----------	----	------

말라리아 박멸사업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1. 3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효율적, 능동적 방제활동으로 말라리아 환자 확산 방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07,000	207,000	207,000	0	207,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41,400	41,400	41,400	0	41,400	0	
시비	165,600	165,600	165,600	0	165,60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7,000		
말라리아 박멸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말라리아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62,824	162,824
		•기본급 89,680원*6명*170일	=	91,474	
		•유급휴일수당 89,680원*6명*45일	=	24,214	
•시간외수당 16,815원*45시간*6명*5월		=	22,700		
•명절휴가비 500,000원*6명*1회		=	3,000		
•피복비 240,000원*6명*1회		=	1,440		
•4대보험료 142,827,450원*14%		=	19,996		
	206-01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	41,776	41,776
•살충제 30,000원*1,000l		=	30,000		
•유충구제제 63,600원*185kg		=	11,776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방역소독 업무추진 간담회 8,000원*20명*15회	=	2,400	2,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신도시 개발로 방치된 나대지, 우수지, 휴경지 등 모기서식지 증가로 방역활동 강화
-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매개모기 유충구제 및 성충방제 방역소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2. :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03. : 말라리아 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3.04. ~ 2023.10. : 말라리아 방역소독사업 추진
- 2023.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도 건강증진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말라리아 예방사업 관련 간담회(1회), 방역반 교육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347건 - 민관 합동방역소독 실시 : 2회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4,680ℓ 사용
2021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말라리아 예방사업 관련 간담회(1회), 방역반 교육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365건 - 민관 합동방역소독 실시 : 6회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4,615ℓ 사용
2022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6명 - 말라리아 예방사업 관련 간담회(3회), 방역반 교육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 성충구제 : 1,888건 - 민관군 합동방역소독 실시 : 6회 -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 5,851ℓ 사용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07,000	186,942	-	20,058	
2021	207,000	201,852	-	5,148	
2022	207,000	201,664	-	5,33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8급 이인정	전화	4119
-----	--------	-------------	-----	----------	----	------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1. 30.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집중관리를 통한 말라리아 환자 감소 및 퇴치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41,040	141,040	141,040	0	144,000	2,960	
국비	70,520	70,520	70,520	0	72,000	1,480	
도비	0	0	0	0	0	0	
시비	70,520	70,520	70,520	0	72,000	1,48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4,000		
말라리아 퇴치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말라리아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27,137	27,137
		•기본급 89,680원*1명*170일	=	15,245	
		•유급휴일수당 89,680원*1명*45일	=	4,035	
		•시간외수당 16,815원*45시간*1명*5월	=	3,784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1회		=	500		
•피복비 240,000원*1명*1회		=	240		
•4대보험료 23,804,575원*14%		=	3,333		
	201-01 사무관리비	◎말라리아 예방 기피제 등 홍보물 구입	=	62,283	62,283
	206-01 재료비	◎말라리아 약품 및 진단시약 등 구입	=	5,000	49,580
		◎방역소독 약품 구입	=	44,580	
		•살충제 30,000원*850ℓ •유충구제제 63,600원*300kg	=	25,500 19,08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방역용 동력분무기 2대*2,500,000원	=	5,000	5,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 활동으로 환자 발생 감소
- 차량용 동력분무기 장비 노후로 교체 필요(취득일 2010.05.19., 내구연한 9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2. :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03. : 말라리아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3.04. ~ 2023.10. :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
- 2023.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질병관리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용품 제작·배부 : 4종 7,320개 배부 - 모기기피제 구입·배부 : 8,026개 배부 -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구입 및 관내 의료기관 배부 : 16개소 - 말라리아 치료제 및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476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1,347건
2021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2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용품 제작·배부 : 4종 3,929개 배부 - 모기기피제 구입·배부 : 10,900개 배부 - 말라리아 치료제 및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476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1,365건
2022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 1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홍보물품 제작·배부 : 6종 6,602개 배부 - 모기기피제 구입·배부 : 14,841개 배부 - 말라리아 신속진단 키트 구입 및 관내 군부대 배부 : 500개 - 말라리아 치료제 및 방역소독용 약품구입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 476회 -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성충구제 : 1,88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41,040	134,868	-	6,172	
2021	141,040	137,436	-	3,604	
2022	141,040	100,914	-	40,126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8급 이인정	전화	4119
-----	--------	-------------	-----	----------	----	------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사업기간	2023. 3. 1. ~ 2023. 11. 30.	사업위치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 지역		
사업목적	군부대 및 마을단위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5,000	45,000	45,000	0	45,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9,000	9,000	9,000	0	9,000	0	
시비	36,000	36,000	36,000	0	36,00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5,000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 방역지원	206-01 재료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살충제 30,000원*600ℓ •기피제 3,750원*4,000개	= = =	33,000 18,000 15,000	33,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 •휴대용연막(연무)기 600,000원*20대	=	12,000	12,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DMZ, 군부대 등 인근 지역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소독용 약품, 장비 지원으로 능동적인 방역활동 추진
- 군부대 및 민간인 방역지원을 통한 자율방역 유도
- 대여용 휴대용연막기 장비노후 및 수요증가에 따른 추가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4. : 민간자율방역실시 계획서 수립
- 2023. 04. ~ 2023. 10. : 사업 추진
- 2023. 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도 건강증진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방역장비(휴대용연막기 등) 대여 : 76대 - 민간군부대 방역약품 지원 : 258건
2021	- 방역장비(휴대용연막기 등) 대여 : 76대 - 민간군부대 방역약품 지원 : 257건
2022	- 방역장비(휴대용연막기 등) 대여 : 76대 - 민간군부대 방역약품 지원 : 22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5,000	44,977	-	23	
2021	45,000	44,996	-	4	
2022	45,000	44,997	-	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보건8급 이인정	전화	4119
-----	--------	-------------	-----	----------	----	------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089명(결핵환자 검사 144명/역학조사 1,323명/가족검진 195명/고위험군 3,077명/돌봄시설 종사자 350명)		
사업목적	높은 발생 및 사망률과 막대한 질병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 제2항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73,133	183,394	191,296	-7,902	180,119	-11,177	
국비	86,566	91,697	95,648	-3,951	90,059	-5,589	
도비	25,970	27,509	28,694	-1,185	27,018	-1,676	
시비	60,597	64,188	66,954	-2,766	63,042	-3,912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119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본급 89,680원*2명*209일 = 37,486 •유급휴일수당 89,680원*2명*57일 = 10,223 •명절휴가비 200,000원*2명 = 400 •정액급식비 130,000원*2명*10월 = 2,600 •위험수당 등 기타 50,000원*2명*10월 = 1,000 •4대보험료 = 6,374	58,083	58,083
	201-01 사무관리비	◎결핵사업 홍보 및 역학조사 수행 = 10,000	10,000	10,000
	202-01 국내여비	◎결핵역학조사 및 교육 여비 = 600	600	600
	307-01 의료및구료비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 111,436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3명*1,577,330원 = 4,732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144명*118,597원 = 17,078 •결핵환자 역학조사 등 1,323명*23,688원 = 31,340 •결핵환자 가족검진 195명*46,502원 = 9,068 •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3,077명*11,400원 = 35,078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350명*40,400원 = 14,140	111,436	111,436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2019년 ~ 2021년 결핵환자 발생 비율(전년대비 감소)에 따른 시군별 차등 지원
- 가족 접촉자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고위험군 결핵, 잠복결핵 검진비 지원
- 결핵환자 및 고위험군(비순응,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성공률 향상을 위한 꾸준한 관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02 : 결핵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01. ~ 2023.12 : 사업진행(결핵환자 관리, 가족접촉자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잠복결핵검사 등)
 - 2023.12. ~ 2024.01.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결핵등록관리: 196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202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40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2건(3,046천원) - 검진 : 결핵검진(홍부X선) 2,128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489건
2021	- 결핵등록관리: 180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181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35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3건(979천원) - 검진 : 결핵검진(홍부X선) 1,688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880건
2022	- 결핵등록관리: 126명 / 잠복결핵양성자관리 : 75건 -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 27개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2건(2,078천원) - 검진 : 결핵검진(홍부X선) 1,140건/ 잠복결핵검진(TST, IGRA) 684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76,823	161,118	-	15,705	
2021	173,133	132,780	-	40,353	
2022	183,394	107,384	-	76,01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심필기	전화	4055
-----	--------	-------------	-----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2개소(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사업목적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결핵예방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당조례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제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②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1,300	72,298	72,298	0	73,530	1,232	
국비	71,300	72,298	72,298	0	73,530	1,232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3,530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 36,765,000원*2개소	= 73,53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여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 환자 발생 감소, 결핵으로 인한 사망 감소를 위함
- 관내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배치(2개소) : 김포우리병원(2015년), 뉴고려병원(2019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의료기관(2개소) 2023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23.01. ~ 2023.02. : 의료기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2023.01. ~ 2023.12. :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업무 수행 및 운영비 집행
- 2024.01. ~ 2024.02. : 2023년 최종보고서 제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2%, 환자 치료성공률 95%,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3.75%, 접촉자 검진율 100%
2021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8%,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98%, 접촉자 검진율 100%
2022	- 김포우리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뉴고려병원 : 환자 관리율 100%, 환자 중단율 0%, 환자 치료성공률 100%, 접촉자 검진율 10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0,658	70,658	-	0	
2021	71,300	71,300	-	0	
2022	72,298	72,298	-	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심필기	전화	4055
-----	--------	-------------	-----	----------	----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명				
사업목적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지원금등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2,240	12,240	4,080	8,160	10,200	6,120	
국비	12,240	12,240	4,080	8,160	10,200	6,12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200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170,000원*12월*5명	= 10,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5명(「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 2022년 2명→ 6명으로 1회 추경 예산 변경 ※ 주민등록상 1명은 타시군으로 지원불가
- 사업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에서 1인당 연간 2,040천원(170천원/월)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12. : 한센인피해사건 지급대상자 위로지원금 지급
- 2024.01. ~ 2024.04. : 2023년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2명(12회)
2021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2명(12회)
2022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총 5명(5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080	4,080	-	0	
2021	4,080	4,080	-	0	
2022	12,240	4,080	-	8,1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심필기	전화	4055
-----	--------	-------------	-----	----------	----	------

한센인 의료지원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3명(의료비지원 3명, 피부병검진 200명)		
사업목적	한센피부병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한센인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제4조제2항제13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100	3,100	3,100	0	3,1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620	620	620	0	620	0	
시비	2,480	2,480	2,480	0	2,48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100	
한센인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 : 500,000원 × 3명	= 1,500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8,000원 × 200명	= 1,6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한센인의 고령화로 의료수요 증가, 근로능력부족 및 경제사정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
- 한센병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이동 피부검진사업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 12월 : 한센피부병 이동진료 계획 수립
- 2023. 5월, 10월 : 이동진료 실시
- 2023. 6월 : 상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2023. 12월 : 하반기 한센인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37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05건
2021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52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02건
2022	- 한센인 의료비 지원 : 3명(54건) -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 20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398	2,398	-	-	
2021	3,100	3,100	-	-	
2022	3,100	1,500	-	1,6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간호6급 심필기	전화	4055
-----	--------	-------------	-----	----------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141명(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141명, 에이즈검사 980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1,020건)		
사업목적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전파 방지 및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49,656	169,064	169,064	0	122,992	-46,072	
국비	74,828	84,532	84,532	0	61,496	-23,036	
도비	0	0	0	0	0	0	
시비	74,828	84,532	84,532	0	61,496	-23,036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22,992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307-01 의료및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 815,000원 × 145명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 3,000원 × 1,366건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 400원 × 1,795건	= 118,176 = 4,098 = 71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전년대비 신규환자 37.5% 감소로 예산액 감소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통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정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023.12. : 신고 및 환자관리
- 2023.01. ~ 2023.12.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
- 2023.01. ~ 2023.12. :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29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544건(93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954건, 에이즈 868건
2021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42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733건(107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989건, 에이즈 1,025건
2022	- HIV 감염인 등록관리 : 143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456건(112명) - 검진 실적 : 성매개감염병 882건, 에이즈 84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08,024	108,005	-	19	
2021	149,656	149,647	-	8	
2022	169,064	92,186	-	76,878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이경희 감염병예방팀장 김효영	담당자	의료기술9급 권다인 간호6급 심필기	전화	4032 4055
-----	--------	----------------------------	-----	------------------------	----	--------------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사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619명 (등록인원)		
사업목적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82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22,820	335,446	208,638	126,808	355,573	146,935	
국비	92,521	42,937	26,706	16,231	45,513	18,807	
도비	94,689	43,944	27,332	16,612	46,580	19,248	
시비	535,610	248,565	154,600	93,965	263,480	108,8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55,573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중증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소계 =	62,900
		·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비: 70,000원*20명*12개월	=	16,800
		· 캠프 운영비: 80,000원*10명*2회	=	1,600
		· 체육대회 운영비: 50,000원*20명*1회	=	1,000
		· 심리지원키트 제작비: 20,000원*250명*2회	=	10,000
		· 고령자프로그램비: 45,000원*10명*10개월	=	4,500
		· 재가프로그램비: 60,000원*5명*10개월	=	3,000
		· 사례관리물품구입: 5,000원*200명*11회	=	11,000
		· 미술전시회비: 15,000,000원*1회	=	15,0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직업재활사업비	소계 = 30,240		
		· 업무도우미 지원 : 100,000원*4명*12개월 = 4,800			
		· 취업자격훈련비 : 5,000원*2명*50회 = 500			
		· 취업프로그램운영비 : 17,000원*10명*12개월 = 2,040			
		· 자조모임운영비 : 20,000원*10명*12개월 = 2,400			
		· 직업재활네트워크비 : 150,000원*5개기관*2회 = 1,500			
		· 청사관리비 : 200,000원*10개월 = 2,000			
		· 사업보고회 : 17,000,000원*1회 = 17,000			
		가족지원사업비	소계 = 14,100		
		· 가족지원사업운영비 : 16,000원*10명*10개월 = 1,600			
		· 가족지원비(후송,치료비등) : 50,000원*20명*12개월 = 12,000			
		· 가족나들이 운영 : 500,000원*1회 = 500			
		정신건강증진사업비	소계 = 123,300		
		· 정신건강강좌비 : 2,000,000원*1회 = 2,000			
		· 프로그램운영비 : 125,000*4주*12회 = 6,000			
		· 리플릿 및 책자 제작비 : 3,000원*1,000부*2회 = 6,000			
		· 정신건강행사비 : 7,500,000원*1회 = 7,500			
		· 캠페인진행비 : 200,000원*8회 = 1,600			
		· 홍보물품제작비 : 3,000원*4종*1,000개 = 12,000			
		· 소식지제작비 : 13,000원*100부*10회 = 13,000			
		· 재난심리지원 : 5,000원*300명*10개월 = 15,000			
		· 재난심리지원프로그램비 : 6,000원*2,000부*2회 = 24,000			
		· 심리지원홍보 : 500,000원*10회 = 5,000			
		· 직장인정신건강사업 키트 제작 : 2,600,000원*12회 = 31,200			
		아동청소년정신사업비	소계 = 62,050		
		· 아동청소년부모교육워크북 : 5,000원*500부 = 2,500			
		· 홍보책자제작비 : 5,000원*1,000부*2회 = 10,000			
· 마음건강프로그램 : 2,000원*1,500명*10회 = 30,000					
· 홍보물품제작비 : 7,000원*1,000부 = 7,000					
· 2차정서행동검사 운영비 : 5,000원*100명 = 500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키트 제작 : 10,000원*60명*2회 = 1,200					
· 아동청소년 가족캠프운영 : 50,000원*30명*2회 = 3,000					
· 아동청소년 홍보사업 리플릿 제작 : 4,000원*1,000부 = 4,000					
· 인식개선캠페인 : 500,000원*4회 = 2,000					
· 아동청소년 교육영상제작 : 1,850,000원*1회 = 1,850					
직원능력개발비	소계 = 11,100				
· 직원교육참가비 : 150,000원*38명 = 5,700					
· 직원교육훈련비 : 350,000원*4명 = 1,400					
· 직원워크샵비 : 2,000,000원*2회 = 4,000					
업무추진비	소계 = 2,100				
· 운영회의비 : 300,000원*4회 = 1,200					
· 업무관련회의비 : 100,000원*4회 = 400					
· 유관기관방문비 : 50,000원*10회 = 5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소계 = 41,783	
		· 차량비 : 1,000,000원*12개월	= 12,000	
		· 공공요금 : 700,000원*12개월	= 8,400	
		· 제세공과금 : 300,000원*12개월	= 3,600	
		· 그룹웨어 및 시설장비유지비 : 981,917원*12개월	= 11,783	
		· 기타운영비 : 500,000원*12개월	= 6,000	
		자산취득비	소계 = 8,000	
		· 컴퓨터 구입비(교체) : 1,000,000원*5대	= 5,000	
		· 사무용책상 구입비(교체) : 300,000원*10대	= 3,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3933(2022.10.14.)호와 관련하여 2022년 대비 146,935천원 증액 편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의 증가 (2021년 506명 → 2022년 619명)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관리회원 수 유지)
- 주간재활, 직업재활프로그램 : 주 4일 ~ 5일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연계)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 교육제공
- 정신건강상담 및 선별검사 : 시민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치료 연계를 통한 조기개입
- 재난정신건강심리지원사업 : 일반 시민 및 재난 경험자 대상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추진
- 2023.02. ~ 12.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3.02. ~ 12.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3.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0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3,154명(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 7,757명(연인원)
2021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6,132명(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및 가족교육 : 5,854명(연인원)
2022	- 재활서비스 실적(주간재활, 직업재활, 기타재활) : 3,370(연인원) - 사례관리(방문, 전화, 내소, 지역방문) 및 가족교육 : 5,175(연인원)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15,986	715,986	-	-	
2021	722,820	722,820	-	-	
2022	335,446	335,446	-	-	

※ '20 ~ '21 : 사업비 + 인건비, / '22 ~ :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편성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4121
-----	-------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정신건강전문인력 27명		
사업목적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 및 중증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제82조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792,435	0	792,435	1,081,680	1,081,680	
국비		237,731		237,731	443,248	443,248	
도비		63,395		63,395	59,621	59,621	
시비		491,309		491,309	578,811	578,8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81,680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력 인건비(27명)		
		· 기본급 : 2,625,000원*27명*12개월	=	850,500
		· 수당 : 50,000원*27명*12개월	=	16,200
		· 4대보험료 : 5,765,000원(27명)*12개월	=	69,180
		· 퇴직적립금 : 250,000원*27명*12개월	=	81,000
		· 여비 : 200,000원*27명*12개월	=	64,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정신건강과-13934(2022.10.14.)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21년 기존인력 20명, '22년 하반기 확충인력(국비) 7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27명을 통합 편성
-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정신질환 관리회원 수 유지로 사례관리 서비스 질적 강화

○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병·의원 퇴원환자 연계 등록·관리
- 미등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내 연계를 통한 미등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한 등록자 향상
- 재난정신건강심리지원사업: 재난 발생 시 일반시민, 재난 경험 고위험군에게 전문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상담, 선별검사, 생애주기별 교육
-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오프라인 홍보, 정신건강예술제, 홈페이지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2023.12. : 결과보고 및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2	- 정신건강 전문인력 27명
------	-----------------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92,435	792,435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4121
-----	-------	------------	-----	------------	----	------

기초자살예방센터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고위험군 및 우울증환자의 자살감소를 위한 치료비 지원, 자살 수단 관리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제4조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55,200	55,200	
국비		0				0	
도비		0			22,080	22,080	
시비		0			33,120	33,1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5,200	
기초 자살예방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사업비		
		· 자살고위험군 프로그램 : 100,000원*4회	=	400
		· 자살유족 프로그램 : 150,000원*10월	=	1,500
		· 정신과치료비지원 : 130,000원*40명	=	5,200
		· 자살예방교육비 : 64,000원*100회	=	6,400
		· 농약안전보관함관리사업 : 100,000원*25개소	=	2,500
		· 농약판매행태개선사업 : 42,500원*12개소*2회	=	1,020
		· 번개탄판매행태개선사업 : 12,000원*25개소*4회	=	1,200
		· 다빈도지역홍보(거리홍보, 버스정류장) : 250,000원*30개소	=	7,500
		· 자살예방캠페인 : 1,000,000원*5회	=	5,000
		· 리플릿 제작 : 3,000원*1,000부	=	3,000
		· 자살예방 홍보물품 제작 : 7,000원*1,000개	=	7,000
		· 1차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 : 42,500원*16기관	=	680
		· 간담회비 : 100,000원*10회	=	1,000
		소계	=	42,4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기초 자살예방센터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300,000원*12월	=	3,600
		· 차량 대여료 : 2,500,000원*1회	=	2,500
		· 사무용품 구입 : 30,000원*10종*10회	=	3,000
		· 신용보증보험 : 1,000,000원*1회	=	1,000
		· 차량 주유비 : 225,000원*12월	=	2,700
		소계	=	12,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381(2022.10.21.)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2022년 자살예방사업 사업비(생명사랑치료비지원, 자살예방시스템확충)를 2023년부터 통합 편성
-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 조기발견,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응급대응
- 환경조성사업 :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수단관리 및 장소통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2. : 2023년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등록 자살고위험군 188명, 사례관리 3,240건, 치료비지원 43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18회 1,971명
2021	- 등록 자살고위험군 180명, 사례관리 4,965건, 치료비지원 40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116회 3,986명
2022	- 등록 자살고위험군 193명, 사례관리 3,701건, 치료비지원 32명(실인원) - 자살예방교육 : 135회 6,514명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사업규모	4명(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사업목적	자살고위험군 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맞춤형 사례관리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해당조례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180,368	180,368	
국비		0				0	
도비		0			72,147	72,147	
시비		0			108,221	108,22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368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력 인건비(4명)		
		· 기본급 : 2,784,000원*4명*12개월	=	133,632
		· 수당 : 250,000원*4명*12개월	=	12,000
		· 4대보험료 : 934,670원(4명)*12개월	=	11,216
		· 퇴직적립금 : 290,000원*4명*12개월	=	13,920
		· 여비 : 200,000원*4명*12개월	=	9,6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381(2022.10.21.)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2022년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생명사랑전담인력, 노인자살예방사업)를 2023년부터 통합 편성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 129 보건복지 콜센터, 방문, 전화상담 등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자살 고위험군 발생신고 :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하여 자살의뢰 대상자 대면상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2. : 2023년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3.12. : 사업평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사업규모	195명(자살고위험군 등록인원)					
사업목적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위기 개입 등을 통한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0,720	40,720	40,720	0	40,720	0	
국비	20,360	20,360	20,360		20,360	0	
도비		0				0	
시비	20,360	20,360	20,360		20,3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72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1명)		
		· 기본급 : 2,010,000원*1명*12월	=	24,120
		· 수당 : 251,000원*1명*12월	=	3,012
		· 여비 : 200,000원*1명*12월	=	2,400
		· 4대보험료 : 210,000원*1명*12월	=	2,520
		· 퇴직적립금 : 150,000원*1명*12월	=	1,800
		소계	=	33,852
		사업비		
		·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200,000원*20회	=	4,000
		· 사례관리 물품 구입 : 4,340원*200개	=	868
		· 자살예방센터 차량 운영 : 1,000,000원*2대	=	2,000
		소계	=	6,86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321(2022.10.20.)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자살예방교육, 선별검사, 응급 위기개입 등 자살예방사업 추진
- 노인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사례관리, 센터 등록 등 지속적 관리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2. : 2023년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903건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60명 - 전화위복 : 330건
2021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2,273건 - 노인자살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60명 - 전화위복 : 960건
2022	- 노인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 1,329건 - 노인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 56명 - 전화위복 : 555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0,720	40,720	-	-	
2021	40,720	40,720	-	-	
2022	40,720	40,72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자살예방사업 및 인식개선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 조성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제13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2,952	70,980	70,980	0	72,192	1,212	
국비	26,476	35,490	35,490	0	36,096	606	
도비	0	0	0	0	0	0	
시비	26,476	35,490	35,490	0	36,096	606	
기타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192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2명)		
		· 기본급 : 2,132,000원*2명*12월	=	51,168
		· 수당 : 368,000원*2명*12월	=	8,832
		· 여비 : 200,000원*2명*12월	=	4,800
		· 4대보험료 : 158,000원*2명*12월	=	3,792
		· 퇴직적립금 : 150,000원*2명*12월	=	3,6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321(2022.10.20.)호 관련하여 2022년 대비 1,212천원 증액 편성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 2명 인건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2.12. : 2023년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자살예방사업 추진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1인 인건비
2021	- 2인 인건비
2022	- 2인 인건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5,320	35,320	-	-	
2021	52,952	52,952	-	-	
2022	70,980	70,98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중독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2조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117,986	0	117,986	239,570	239,570	
국비		58,993	0	58,993	119,785	119,785	
도비		0	0			0	
시비		58,993	0	58,993	119,785	119,785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9,570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인건비			
		· 기본급 : 2,313,000원*6명*12월	=	166,536	
		· 수당 : 50,000원*6명*12월	=	3,600	
		· 4대보험료 : 271,000원*6명*12월	=	19,512	
		· 퇴직적립금 : 192,920원*6명*12월	=	13,890	
		· 여비 : 181,000원*6명*12월	=	13,032	
		소계	=	216,570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10,000원*10명*12회	=	1,200	
		· 프로그램 강사비 : 60,000원*1명*20회	=	1,200	
· 중독정신건강 홍보물등 제작 : 2,900원*5,000개	=	14,500			
· 중독정신건강 캠페인 : 1,000,000원*5회	=	5,000			
· 사례관리물품 구입 : 5,000원*20명*11회	=	1,100			
소계	=	23,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2722(2022.9.20.)호 가내시 관련 ‘22년 총액예산 대비 121,584천원 증액
- ‘22. 7월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팀) 신설로 ‘23년 지속 운영에 따른 증액
- 중독관리 사업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6명 인건비 통합 예산
- 사업내용
 - 알코올 등 중독문제를 가진 고위험군 조기발견, 사례관리
 - 중독 정신건강 홍보, 교육, 인식개선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22. 02.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관리통합지원(팀) 신설 요청
- 2022. 06. : 국고보조금 예산 승인
- 2022. 07.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채용(4명)
- 2022. 07. ~ : 중독관리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2. ~ 12. : 중독 사례관리, 정신건강 홍보, 교육, 인식개선사업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등록 11명, 사례관리 93건, 캠페인 2회 251명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117,986	117,986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06명(센터 등록 회원 중 만 19세~34세 청년, 만 60세 이상 노인)		
사업목적	청년 및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정신질환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4조, 제80조
	위임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69,240	69,240	0	94,800	25,560	
국비		34,620	34,620		47,400	12,780	
도비		5,193	5,193		7,110	1,917	
시비		29,427	29,427		40,290	10,8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합 계	94,800		
		사업비			
		· 마인드케어 외래치료비 지원 : 360,000원*109명	=	39,240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360,000원*71명	=	25,560	
		· 안내서 제작 및 물품 구입 : 3,000원*3,000부	=	9,000	
		·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 4,000원*2종*500개	=	4,000	
		· 직원 역량강화 : 790,000원*4회	=	3,160	
		· 유관기관 네트워크 : 100,000원*10회	=	1,000	
		· 인식개선 캠페인 : 500,000원*4회	=	2,000	
		·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강좌 : 500,000원*2회	=	1,000	
		· 조기중재 가족교육 : 100,000원*10회	=	1,000	
		· 마인드링크 프로그램 운영 : 5,000원*90명*12회	=	5,400	
		·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120,000원*12회	=	1,440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 20,000원*100회	=	2,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475(2022.10.24.)호 관련하여 2022년 대비 25,560천원 증액 편성
- 노인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 60세이상 1인당 36만원/ 년 한도
-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 청년 1인당 36만원/ 년 한도
- 청년마인드링크사업, 청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선별 및 등록,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74명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실인원 12명(연인원 64명)/ 1,694,600원
2021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227명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실인원 11명(연인원 35명)/ 1,234,300원
2022	- 청년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 235명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실인원 9명(연인원 14명)/ 1,187,1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49,240	149,240	-	-	
2021	149,240	149,240	-	-	
2022	69,240	69,24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73명(센터 등록관리 인원)		
사업목적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제82조
	해당조례	김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13,300	13,300	0	13,300	0	
국비		6,650	6,650		6,650	0	
도비		0				0	
시비		6,650	6,650		6,65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3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사업비		
		· 프로그램 강사비 : 60,000원*4명*10월	=	2,400
		·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 200,000원*10회	=	2,000
		· 외래치료비 지원 : 50,000원*5명*12월	=	3,000
		· 심리검사지원비 : 400,000원*5명	=	2,000
		· 프로그램 사후모임 운영 : 50,000원*10회	=	500
		· 아동청소년사업 홍보비 : 500,000원*4회	=	2,000
		· 교사 및 부모교육 진행비 : 500,000원*2회	=	1,000
		· 2차정서행동특성화검사 : 200,000원*2회	=	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475(2022.10.24.)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의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홍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3. ~ 11.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교사, 학부모 교육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등록관리 / 75명(실인원) - 집단프로그램 / 93명(연인원)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 1,098명(연인원)
2021	- 등록관리 / 65명(실인원) - 집단프로그램 / 45명(연인원)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 3,868명(연인원)
2022	- 등록관리 / 72명(실인원) - 집단프로그램 / 88명(연인원) - 교사,학생 및 관계자 교육 / 6,370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1,970	51,970	-	-	
2021	52,294	52,294	-	-	
2022	13,300	13,3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6급 박임순	전화	4121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경기도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0명(정신질환자)		
사업목적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4조, 제80조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8,472	30,852	30,852	0	30,670	-182	
국비	34,236	15,426	15,426		15,335	-91	
도비		0				0	
시비	34,236	15,426	15,426		15,335	-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670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 · 조기 치료 지원비 : 166,750원*40명 = 6,670 · 행정입원비 지원 : 1,125,000원*20명 = 22,500 · 응급입원비 지원 : 100,000원*10명 = 1,000 · 외래치료 지원 : 100,000원*5명 = 5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3973(2022.10.17.)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4916(2022.9.18.)호 관련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비율 기준 감액
-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질환 행정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소득기준 제한 없음)
 - 조기치료 지원비(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 2023.0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25명(실인원) / 66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1,369,440원
2021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90명(실인원) / 143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760,800원
2022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37명(실인원) / 54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523,746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4,236	34,236	-	-	
2021	68,472	68,472	-	-	
2022	30,852	19,379	-	11,47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보건7급 김정민	전화	4122
-----	-------	------------	-----	----------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26명(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임규정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 제11조
		【조례】 제4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담의 경감 등)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86,920	86,920	86,920	0	86,920	0	
국비		0				0	
도비	43,460	43,460	43,460		43,460	0	
시비	43,460	43,460	43,460		43,46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6,920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도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전담인력 배치			
		· 기본급 : 2,516,600원*1명*12월	=	30,199	
		· 수당 : 300,000원*1명*12월	=	3,600	
		· 4대보험료 : 200,000원*1명*12월	=	2,400	
		· 퇴직적립금 : 210,000원*1명*12월	=	2,520	
		· 여비 : 106,750원*12월	=	1,281	
		소계	=	40,000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 초기진단비 지원 : 400,000원*43명	=	17,200	
		· 응급입원비 지원 : 50,000원*2명	=	100	
· 행정입원비 지원 : 1,000,000원*1명	=	1,000			
· 외래치료 지원 : 360,000원*1명	=	360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357,721원*79명	=	28,260			
소계	=	46,92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046(2022.10.18.)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입원 및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담인력 1명 배치
 -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외래진료(지원조건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계획수립
 - 2023.01. ~ 12. : 정신질환자 치료비(도비) 지원
 - 2023.12. : 사업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채용기간 : 2020.4.1. ~ 2020.12.31. - 전담인력 채용 : 1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74명(실인원) / 105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561,900원
2021	- 채용기간 : 2021.1.1. ~ 2021.12.31. - 전담인력 채용 : 1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167명(실인원) / 291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520,480원
2022	- 채용기간 : 2022.1.1. ~ 2022.12.31. - 전담인력 채용 : 1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 수 : 183명(실인원) / 277명(연인원) / 1인 평균 지원금액 : 31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86,920	41,583	-	45,337	
2021	86,920	86,920	-	-	
2022	86,920	64,024	-	22,89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보건7급 김정민	전화	4122
-----	-------	------------	-----	----------	----	------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8명(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사업목적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를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18,600	14,400	4,200	22,800	8,400	
국비		0				0	
도비		18,600	14,400	4,200	22,800	8,4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2,800	
시군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50,000원*38명*12월	= 22,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정신건강과-14482(2022.10.24.)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38명)의 처우 개선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12.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20명
2021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24명
2022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 3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1,100	8,650	-	2,450	
2021	13,800	12,200	-	1,600	
2022	18,600	13,650	-	4,95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간호8급 기예진	전화	4124
-----	-------	------------	-----	----------	----	------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심사위원 7명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입원 및 행정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 등 입원기간 관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3조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4조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등 기간 연장의 심사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720	6,720	6,720	0	6,72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720	6,720	6,720	0	6,72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720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 80,000원*7명*12월 =	6,72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월 1회 이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12. :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접수·심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443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440명 - 퇴원명령 : 3명
2021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2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568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565명 - 퇴원명령 : 3명
2022	- 정신건강심의(심사) 개최 횟수 : 10회 - 입원연장 및 퇴원 심사 청구 : 433명 - 입원연장 및 계속입원 : 429명 - 퇴원명령 : 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6,720	5,528	-	1,192	
2021	6,720	6,400	-	320	
2022	6,720	4,720	-	2,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보건7급 김정민	전화	4122
-----	-------	------------	-----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여성어린이특화, 지역사회중심재활 등) 추진으로 건강행태 인식개선 및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소 감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97,562	480,622	480,622	0	473,600	-7,022	
국비	248,781	240,311	240,311		236,800	-3,511	
도비		0				0	
시비	248,781	240,311	240,311		236,800	-3,51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73,6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2명/8개월) · 급여액 : 89,680원*170일*2명 = 30,491 · 주휴수당 : 89,680원*45일*2명 = 8,071 · 4대보험 : 14,803,570원*2명*14% = 4,145 · 명절수당 : 500,000원*1명 = 500	43,207	
	201-01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 걷기 워크온 어플 사용료 : 900,000원*12월 = 10,800 · 홍보물품 구입 : 2,000원*2종*7,182개 = 28,728 · 신체활동 교육물품 구입 : 3,000원*1,000개 = 3,000 · 영양·비만 예방 교육물품 구입 : 2,000원*2,475개 = 4,950 ·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 3,500*4종*120개 = 1,680	43,207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리플릿 제작 : 1,210원*1,000개 = 1,210			
		· 절주 사업 지하철 홍보 : 1,150,000원*1개월*3곳 = 3,450			
		· 요리실습 재료비 : 300,000원*2회 = 600			
		· 사무용품 구입 : 4,700원*354개 = 1,664			
		· 통합건강증진 달력 제작 : 3,000원*4,000부 = 12,000			
		·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 240,000원*15명 = 3,600			
	201-01 사무관리비	구강보건사업 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용품 구입 : 1,800원*3,000개*3종 = 16,200		
		· 교육용 교재 구입 : 1,780원*2,500권*2종 = 8,900			
		· 치주질환 관리용품 구입 : 2,000원*2,905개 = 5,810			
		· 홍보용 리플렛 및 안내문 제작 : 1,000원*1,000개*3종 = 3,000			
		· 어린이 구강도서 구입 : 11,000원*510권 = 5,610			
		· 올바른 칫솔질 교육용 칫솔 구입 : 1,000원*5,240개 = 5,240			
	201-01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내문 제작 : 200원*4,000부 = 80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예방관리책자 구입 : 1,000원*1,000권 = 1,00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 2,000원*3,000개 = 6,000					
· 표준화교육(영양) 운영비 : 100,000원*3회 = 300					
· 버스 외면 광고 : 500,000원*5대*1개월 = 2,500					
· 고당e공부방 사용료 : 55,000원*12개월 = 660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 재활사업 폭염·한파 대비 안내문 제작 : 50원*2,000부*2회 = 200			
	· 재활사업 폭염·한파 대비 홍보물 제작 : 2,500원*2,000개*2회 = 10,000				
	· 재활협의체 위원 수당 : 80,000원*8명*2회 = 1,280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운영	·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 2,000원*4,000명 = 8,000			
	소계	= 147,182			
	201-03 행사운영비	재가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운영	· 문화체험 운영비 : 1,580,000원*1회 = 1,580		
· 장애인차량 임차비 : 850,000원*2대 = 1,700					
소계		= 3,28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간담회 : 30,000원*10명*2회 = 600			
	재가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체험 급식비 : 8,000원*45명 = 360			
	· 장애인 문화체험 간식비 : 4,000원*45명 = 180				
소계	= 1,140				
301-14 기타보상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 올바른 걷기 강사비 : 200,000원*8회 = 1,600			
	· 한방육아교실 강사비 : 100,000원*16회 = 1,600				
	·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비 : 100,000원*16회 = 1,600				
	· 음주폐해예방 강사비 : 150,000원*3회 = 450				
	· 어르신 요리 실습 강사비 : 160,000원*2회 = 320				
	·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놀이터 교육 강사비 : 80,000원*12회*2개교 = 1,920				
301-14 기타보상금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운영	· 산전 출산교실 강사비 : 100,000원*4명*8월 = 3,200			
	· 산후 회복교실 강사비 : 100,000원*4명*8월 = 3,200				
	소계	= 13,890			
307-01 의료및구료비	구강보건사업 운영	· 충치예방용 불소(바니쉬) 구매 : 2,000원*4,000개 = 8,00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 알콜솜, 란셋 등 검사소모품 : 4,000원*1,000명 = 4,000	4,000	
		재가장애인 의료지원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 영양제 : 4,800원*1,000명 = 4,800	4,800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 철분제 : 6,000원*8,000개 = 48,000 · 엽산제 : 3,500원*4,300개 = 15,050	48,000 15,050	
		소계 = 79,850	79,850	
	202-01 국내여비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여비 · 여비 : 50,000원*1명*12월 = 600	600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여비 · 여비 : 80,000원*2명*12월 = 1,920	1,920	
소계 = 2,520		2,52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1명) · 기본급 : 2,581,890원(14호봉)*1명*12월 = 30,982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605,740원*60%*1명*2회 = 3,126 · 시간외수당 : 21,370원*10시간*1명*12월 = 2,564	30,982 1,680 3,126 2,564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인건비 (2명) · 기본급 : 2,510,360원(11호봉)*1명*12월 = 30,124 · 기본급 : 2,558,060원(13호봉)*1명*12월 = 30,696 · 정액급식비 : 140,000원*2명*12월 = 3,360 · 명절수당 : 2,510,360원*60%*1명*2회 = 3,012 · 명절수당 : 2,558,060원*60%*1명*2회 = 3,070 · 가족수당 : 120,000원*2명*12월 = 2,880 · 시간외수당 : 20,820원*10시간*12월 = 2,498 · 시간외수당 : 21,190원*10시간*12월 = 2,542	30,124 30,696 3,360 3,012 3,070 2,880 2,498 2,542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공무직 인건비 (1명) · 기본급 : 2,415,020원(7호봉)*1명*12월 = 28,980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415,020원*60%*1명*2회 = 2,898 · 연차수당 : 105,440원*10일 = 1,054	28,980 1,680 2,898 1,054	
		소계 = 151,146	151,146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 로자 보험료부담금등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보험금 (1명) · 4대보험 : 38,352,000원*14%*1명 = 5,369 · 퇴직금 : 2,741,670원*1명*1회 = 2,741	5,369 2,741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보험금 (2명) · 4대보험 : 38,754,000원*14%*1명 = 5,426 · 4대보험 : 39,428,000원*14%*1명 = 5,520 · 퇴직금 : 2,510,360원*1명*1회 = 2,510 · 퇴직금 : 2,558,060원*1명*1회 = 2,558	5,426 5,520 2,510 2,558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공무직 보험금 (1명) · 4대보험 : 34,612,000원*14%*1명 = 4,846 · 퇴직금 : 2,415,020원*1명 = 2,415	4,846 2,415	
		소계 = 31,385	31,385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예산 증감사유

- 경기도 건강증진과-15751(2022.10.11.)호 가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분배 : 보건사업과 90%(473,600천원), 북부보건과 10%(52,624천원)

○ 사업내용

- 2013년부터 기존 국고보조사업(9개분야)을 보건사업지침에 의거 1개 사업으로 통합 편성 운영
 ①음주폐해예방(절주) ②신체활동 ③영양 ④비만예방관리 ⑤구강보건
 ⑥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⑦한약건강증진 ⑧여성어린이특화 ⑨지역사회중심재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22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계획수립
- 2023.02. ~ 11. :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
- 2023.12. :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p>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15회 434명 · 건강증진센터 운영 : 1,275명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 492명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2,594명 · 절주교육 : 758명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운동, 영양, 질환상담) : 258명(실인원) <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고혈압·당뇨 표준화 교육(상설) : 115회/115명 · 고혈압당뇨병 1:1 방문 표준화 교육 : 8회/63명 <p>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690명 · 건강서비스 : 3,490회, 자원연계 246명 <p>구강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유아, 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등 828회 / 30,239명 · 학교구강보건실운영 : 3회/272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5,410명 ·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 3개 유아기관/288명 ·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 105명 <p>한약건강증진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 893명 · 한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 10명 <p>모자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103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4,119명(연인원)
------	--

2021	<p>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영양상담실 운영 : 755명 · 대사증후군관리사업(신체활동, 영양, 질환관련 상담) : 574명 <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비대면) : 80회/80명(실인원)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1:1 가정방문교육) : 16회/40명(실인원) · 고당e공부방 온라인 학습 등록자 : 92명 <p>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592명 · 건강서비스 : 방문(1,750회) 유선점검(1,002회) · 재활보장구 대여 : 280건 ·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접수 : 8명 <p>구강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유아, 청소년, 장애인, 경로당 등 706회 / 38,318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60,397명 ·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 3개 유아기관/288명 ·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 276명 <p>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으로 내 건강 지키기’ 사업 : 1,795명 ·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 7명 <p>모자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4,032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5,355명(연인원)
2022	<p>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 2,746명 · 영양상담실 운영(전화 상담) : 430명 · 대사증후군관리 대상자 전화상담 : 573명 <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비대면) : 8회/19명(실인원) · 고혈압·당뇨병 예방 표준화 상설교육(대면) : 12회/45명(실인원) · 고당e공부방 온라인 학습 등록자 : 110명 <p>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 477명 · 건강서비스 : 방문(1,221회) 내소(4회) 유선점검(615회) · 재활보장구 대여 : 246건 ·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 접수 : 11명 <p>구강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 유아, 청소년, 임신부, 노인 등 152회 / 5,728명 · 기업체 구강건강교육 : 6회 291명 ·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 15회 3,650명 · 불소용액양치사업 : 시민 19,040명 <p>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 4명 <p>모자보건사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등록 및 관리 : 3,449명 · 임신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 4,105명(연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43,484	342,490	-	993	
2021	341,672	340,170	-	1,502	
2022	322,402	231,125	-	91,27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8급 김지선	전화	4185
-----	-------	------------	-----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33명(등록인원)		
사업목적	취약계층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신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62,600	170,848	170,848	0	179,914	9,066	
국비	81,300	85,424	85,424		89,957	4,533	
도비						0	
시비	81,300	85,424	85,424		89,957	4,533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9,914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인건비		
		· 기본급 : 2,462,710원(9호봉)*1명*12월	=	29,552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수당 : 2,450,780원*60%*1명*2회	=	2,941
		· 가족수당 : 40,000원*1명*12월	=	480
		· 시간외근무수당 : 20,350원*15시간*1명*12월	=	3,663
		소계	=	38,316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직 보험금		
		· 4대보험 : 38,316,456원*14%*1명	=	5,364
		· 퇴직금 : 2,462,710원*1명	=	2,463
		소계	=	7,82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구입 : 2,000원*2종*1,520개	=	6,080
		· 영양플러스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 41,500원*2종	=	83
		소계	=	6,163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201-03 행사운영비	· 영양플러스사업 요리실습 강사비 : 160,000원*2회 = 320 · 영양플러스사업 요리실습 재료비 : 10,000원*80명*2회 = 1,600		
		소계 =	1,920	
	202-01 국내여비	· 여비 : 100,000원*1명*12월 =	1,2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 78,000원*133명*12월 =	124,48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예산 증가 사유

- 영양플러스사업 공무원 근로자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 전년 대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충 식품 지원비 증가

○ 사업 내용

-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 개선
- 대상자별 월 2회 보충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및 빈혈측정 등)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事成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기본계획수립
- 2023.01. ~ 02. : 세부추진계획
- 2023.03. ~ 11. : 영양플러스사업 집행
- 2023.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평가 실시 : 1,010명/508명 - 대상자 가정방문 및 상담 : 63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1회
2021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4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평가 실시 : 715명 - 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110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2회
2022	- 보충식품 검수 및 공급 : 20회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평가 실시 : 535명 - 대상자 가정방문 교육 : 81명 - 보충식품이용 영양 간식 실습 : 2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60,280	159,510	-	770	
2021	162,600	162,600	-	-	
2022	170,848	138,690		32,15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8급 김지선	전화	4185
-----	-------	------------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 전지역			
사업목적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금연실천 유도로 흡연을 감소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제6조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238,856	238,856	0	231,540	-7,316	
국비		119,428	119,428		115,770	-3,658	
도비		0				0	
시비		119,428	119,428		115,770	-3,65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31,54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1,210원*8시간*1명*8월(170일)	=	15,246
		- 11,210원*8시간*1명*4월(85일)	=	7,622
		· 유급휴일수당		
		- 89,680원*1명*45일	=	4,036
		- 89,680원*1명*23일	=	2,062
		· 금연상담사(기간제근로자) 여비 : 20,000원*1명*50회	=	1,000
		· 4대보험료		
- 20,281,200원*14%*1명	=	2,840		
- 9,685,440원*14%*1명	=	1,355		
		소계	=	34,161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노면표지 : 37,000원*518개*1종 = 19,166		
		· 금연구역 스티커 구입 : 2,600원*1,000개*4종 = 10,400		
	·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 2,000원*2,000개*2종 = 8,000			
	· 금연아파트 현판 제작 : 200,000원*12개 = 2,400			
	· 금연아파트 현수막 제작 : 55,000원*21개 = 1,155			
	· 금연행동요법 용품구입 : 2,000원*1,500개*6종 = 18,000			
		· 금연상담 및 교육용 교구 구입 : 600,000원*1개 = 600		
		· 금연상담실 장비 유지보수 : 300,000원*2대 = 600		
		·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 655,000원*1회 = 655		
		소계 =	60,976	
	201-03 행사운영비	· 유아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공연 : 1,200,000원 * 5회 =	6,000	
	202-01 국내여비	· 금연상담사(공무직) 출장여비 : 20,000원*50회 =	1,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금연사업 회의 및 행사 급식비 : 8,000원*15명*3회 =	360	
	301-14 기타보상금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 50,000원*4명*165회 = 33,000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 70,000원*2명*146회 = 20,440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 : 150,000원*12회 = 1,800		
		·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 50,000원*100명 = 5,000		
		소계 =	60,240	
	307-01 의료및구료비	· 금연보조제 구입 : 10,000원*8종*250갑 =	20,000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기본급 : 2,472,980원*1명*12월 = 29,676		
		· 정액급식비 : 140,000원*1명*12월 = 1,680		
	· 명절휴가비 : 1,483,785원*1명*2회 = 2,968			
	· 시간외근무수당 : 20,520원*18시간*1명*12월 = 4,432			
	· 연차유급휴가수당 : 109,440원*1명*10일 = 1,094			
	· 가족수당 : 20,000원*1명*12월 = 240			
		소계 =	40,090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4대보험료 : 40,090,050원*14%*1명 = 5,613		
		· 퇴직금 : 3,100,000원*1회 = 3,100		
		소계 =	8,713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752(2022.10.11.)호와 관련, 2022년 대비 7,316천원 감액 편성
-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환경 조성(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지정 등)
- 금연교육 및 홍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금연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2023.01. ~ 12.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2023.03. ~ 06. :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지 설치
- 2023.05. ~ 06. :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공연
- 2023.12. : 금연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0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391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1,281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4,068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7건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0개소(총 38개소)
2021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954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722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9,406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78건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9개소(총 47개소)
2022	-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751명 - 등록자 중 5회 이상 금연 상담자 수 : 399명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8,564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88건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3개소(총 50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20,308	206,351	-	13,957	
2021	227,208	226,671	-	537	
2022	238,856	187,482	-	51,37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9급 오진희	전화	4125
-----	-------	------------	-----	------------	----	------

금연환경조성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시공원
사업규모	도시공원 21개소		
사업목적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해당조례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조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호: 도시공원) 제6조(금연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950	54,800	54,800	0	60,480	5,6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50	54,800	54,800	0	60,480	5,6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480	
금연환경조성	401-01 시설비	· 태양광 LED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2,880,000원 * 21개소 =	60,48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도시공원 금연구역 홍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 도시공원 총 21개소 설치
 - 미설치 공원 내 신규 설치 : 6개소
 - 기설치(2015년)된 노후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교체 : 12개소
 - 규모가 큰 도시공원(10,000㎡ 이상) 추가 설치 : 3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02. :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 수립
- 2023.03. : 설치 공문 사전답사(공원관리과 협조)
- 2023.04. :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작
- 2023.06. : 설치 완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목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 2개소 - 기존 목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위 'LED 금연점등' 설치 : 3개소
2022	- 태양광 LED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2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4,950	4,950	-	-	
2022	54,800	52,347	-	2,45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보건사업팀장 박임순	담당자	의료기술9급 오진희	전화	4125
-----	-------	------------	-----	------------	----	------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405명			
사업목적	예방중심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 실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18조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개정 2015. 5.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해당조례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5조
		제5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교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52,200	254,100	275,100	-21,000	270,250	-4,850	
국비		0				0	
도비	164,640	177,870	192,570	-14,700	189,175	-3,395	
시비	70,560	76,230	82,530	-6,300	81,075	-1,4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250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 80,000원*10명*1회	= 800	
		· 서식지 인쇄 : 100원*8,000매*4종	= 3,200	
	· 홍보물품 : 10,000원*621개	= 6,210		
		소계	= 10,21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 3,000원*200건	= 6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 48,000원*5,405명	= 259,44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공공의료과-11425(2022.10.13.)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학생구강검진)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협약된 치과의료기관을 통하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받고 치과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증진을 위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계획수립
 - 2023. 02. : 참여 치과의료기관 선정
 - 2023. 03. : 치과의료기관 및 초등학교 사업추진 절차 안내 및 지침서 배부
 - 2023. 04. ~ 11.: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실시
 - 2023. 12. : 사업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참여의료기관 계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진 차년도 연기 결정
2021	- 지역협의체 구성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8,577명(4~5학년) - 예산 이월
2022	- 참여의료기관 계약 -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검진비 지급 4,310명(4학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22,600	40	222,560	222,560	
2021	457,760 (222,560+235,200)	354,146	-	103,614	
2022	254,100	154,577	-	99,52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8급 홍윤정	전화	4133
-----	-------	------------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사업기간	2023. 01. 01. ~ 2023. 03.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구강보건사업대상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업목적	건강취약계층대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19조
	제19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17,900	17,900	
국비		0			11,934	11,934	
도비		0			2,983	2,983	
시비		0			2,983	2,98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7,900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치과유닛 및 의자 : 17,900,000원*1대	= 17,9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보건의료과-25196(2022.09.19.)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내구연한 경과(내구연한 : 10년, 구입일자 : 2007.02.14)
- 사업내용 :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치과진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	-	-	-	-	-	-	-	-	-
일자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물품 구입 발주
 - 2023.02. ~ 03. : 장비설치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8급 홍윤정	전화	4133
-----	-------	------------	-----	----------	----	------

구강보건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구강보건법		제6조 제1항
	제6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000	14,916	14,916	0	6,200	-8,716	
국비							
도비							
시비	6,000	14,916	14,916	0	6,200	-8,716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200	
구강보건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치과진료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 200,000원*5회 · 치과진료실 소모품 구입: 100,000원*13종 · 공기청정기 대여비 : 350,000원*2대	= 1,000 = 1,300 = 7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장애인치과 진료(의료진) 봉사자 급식 : 8,000원*5명*20회	= 8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과진료 기자제(레진, 실런트 등) 구입 : 100,000원*24종	= 2,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구강보건실 사무가구 및 치과용 의료기구 구입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 편성
-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구강예방서비스(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등)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장애인치과진료 등 치과진료 계획 수립
- 2023.02. : 치과진료 기자재 구입
- 2023.02. ~ 12. : 치과진료를 위한 장비 유지 보수
- 2023.03. ~ 12. : 장애인치과진료 운영
- 2023.12. : 장애인치과진료 등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불소용액양치사업 : 1,803명 -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 35회/2,500명 - 노인 스케일링사업 : 34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치과진료 등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1	- 불소용액양치사업 : 8,132명 -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 40회/3,500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치과진료 등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2	- 불소용액양치사업 : 6,349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치과진료 등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800	5,800	-	-	
2021	6,000	5,765	-	235	
2022	14,916	12,389	-	2,52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보건8급 홍윤정	전화	4133
-----	-------	------------	-----	----------	----	------

한방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한방진료 및 한방 난임 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건강 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300	9,300	9,300	0	11,250	1,9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300	9,300	9,300	0	11,250	1,9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1,250	
한방 건강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한방진료실 장비 유지관리비 : 350,000원*2대 ·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 : 50,000원*2종	= 700 = 10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 350,000원	= 350	
	307-01 의료및구료비	· 일회용침 등 의료소모품 구입 : 50,000원*3종 · 한약제 등 의약품 구입 : 150,000원*6종 ·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750,000원*10명	= 150 = 900 = 7,500	
	405-01 자산취득비	· 한방진료실 캐비닛 설치 : 750,000원 · 한방진료실 커튼 설치 : 800,000원	= 750 = 8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한방진료실 사무가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 한방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만40세 이하의 원인불명 난임여성 대상 한약 약제비 지원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풍, 만성질환 예방 등 한의학적 건강관리 교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한방진료실 운영 계획 수립
- 2023.02. :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
- 2023.03. : 한방진료를 위한 캐비닛 등 구입
- 2023.01. ~ 12. : 한방진료실 운영
- 2023.12. : 한방진료실 운영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한방진료(578명), 한방난임사업(10명 지원)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방진료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1	한방난임사업 (7명 지원)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방진료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2	한방난임사업 (4명 지원)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한방진료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3,000	12,997	-	3	
2021	9,300	7,100	-	2,200	
2022	9,300	1,558	-	7,74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간호8급 이은임	전화	4132
-----	-------	------------	-----	----------	----	------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개인의 특징에 맞는 운동 처방 및 지도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440	2,967	2,967	0	1,800	-1,16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40	2,967	2,967	0	1,800	-1,16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	
건강증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건강증진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 350,000원*2대 · 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도구 구입 : 10,000원*4종*25개 · 건강증진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 50,000원*2종	= 700 = 1,000 = 1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건강증진센터 가구 구입 및 정비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 편성
- 기초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 지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23.01. : 소모품 구입
- 2023.01. ~ 12. : 건강증진센터 운영
- 2023.01. ~ 12. : 건강증진센터 장비 유지관리
- 2023.12. : 건강증진센터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건강 알기 사업 : 241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221명 ○ 건강증진센터 이용 : 1,034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잠정 중단(2020.02~상황 종료시까지)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건강 알기 사업 : 23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64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 잠정 중단(2020.03~상황 종료시까지)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건강 알기 사업 : 19명(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후 운동상담, 처방 및 지도) ○ 대사증후군 운동상담 : 19명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 잠정 중단(2020.03~상황 종료시까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2,264	30,122	-	2,142	
2021	1,440	1,437	-	3	
2022	2,967	2,711	-	256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장 김애경	담당자	간호8급 이은임	전화	4132
-----	-------	------------	-----	----------	----	------

예방접종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김포시민		
사업목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및 홍보 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령 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2,854	55,855	55,855	0	43,855	-1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2,854	55,855	55,855	0	43,855	-1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3,855	
예방접종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예방접종실 운영 - 예진표 제작 : 60원*3종*10,000부 = 1,800 - 접종실 진료가운 : 100,000원*5명 = 500 ·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물 제작 -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 70원*15,000부*2회 = 2,100 - 현수막 제작 : 50,000원*30개 = 1,500 -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 1,000원*4,000개 = 4,000 · 공기청정기 대여비 : 30,000원*2대*12개월 = 720		
	201-02 공공운영비	· 예방접종 지침 우편발송 : 5,500원*210개소 = 1,155 · 예방접종 툴킷 우편발송 : 6,000원*180개소 = 1,080 · 장비(약품냉장고, 신장체중계 등) 유지보수비 : 500,000원*3대 = 1,500		
	307-01 의료및구료비	·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 12,000원*2,000명 = 24,000 · 예방접종 기자재(알콜솜, 거즈 등) 구입 : 20,000원*5종*20개 = 2,000		
	405-01 자산취득비	· 냉난방기 구입 : 3,500,000원*1대 = 3,5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냉방기(취득일: 2011.02, 내구연한 10년, 사용연수 11년)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편성(정수승인: 회계과-22379호)
- 예방접종 사업 운영을 위한 안내문 및 예진표 등 제작
-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등 유지보수비
-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및 기자재 구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승인	-	-	-	-
일자	2022.11.	-	-	-	-	2022.08.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12. : 사업추진
- 관내 위탁의료기관 관리(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배부)
- 2023.10. ~ 12. : 인플루엔자 자체 예방접종 시행
- 2023.12. : 예방접종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물(유아용 안전손톱깎이)제작: 800개 - 고위험군 B형간염 유료접종: 316건 -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1,160도즈
2021	- 예방접종 예진표, 안내문 및 동의서 제작: 1,049,800매 -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2,000도즈 - 예방접종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 2,451,490원
2022	- 예방접종 홍보 안내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 10,143,570원 - 자체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1,800도즈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99,780	50,208	-	49,572	
2021	92,854	31,177	-	61,677	
2022	55,855	13,842	-	42,01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감가현 간호8급 서화정	전화	4156 4157
-----	-------	------------	-----	----------------------	----	--------------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 및 등록 관리를 통한 영유아 예방접종률 제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6,780	26,780	26,780	0	27,240	460	
국비	13,390	13,390	13,390		13,620	230	
도비	4,017	4,017	4,017		4,086	69	
시비	9,373	9,373	9,373		9,534	16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240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19,730,000원*1명 · 유급수당 : 3,676,880원*1명 · 명절수당 : 500,000원*1명*1회 · 4대보험료 등 : 23,807,140원*1명*14%	= 19,730 = 3,677 = 500 = 3,333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질병정책과-36879(2022.10.10.)호와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2023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으로 증액(22년 10,860원 대비 3.2% 인상하여 11,210원으로 변경)
- 예방접종실 전담인력 1명 확보로 체계적인 예방접종 등록 및 미접종자 관리(적기 접종 독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07.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2023.01. ~ 12. :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 2023.01. ~ 12. : 예방접종사업 홍보 실시
- 2023.01. ~ 12.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관리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출생아 적기 접종 관리: 1,850건 - 만 65세 어르신 폐렴 접종 관리: 1,669건
2021	- 출생아 적기 접종 관리: 1,945건 - 만 65세 어르신 폐렴 접종 관리: 3,669건
2022	- 출생아 적기 접종 관리: 2,668건 - 만 65세 어르신 폐렴 접종 관리: 92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6,544	26,544	-	-	
2021	26,780	20,285	-	6,495	
2022	26,780	23,180	-	3,6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감가현	전화	4156
-----	-------	------------	-----	----------	----	------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21,206건(예방접종 목표 건수)		
사업목적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시민건강 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2항, 제28조 제1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884,852	9,064,472	8,974,664	89,808	8,355,990	-618,674	
국비	3,942,426	4,532,236	4,487,332	44,904	4,177,995	-309,337	
도비	1,182,727	1,359,671	1,346,200	13,471	1,253,398	-92,802	
시비	2,759,699	3,172,565	3,141,132	31,433	2,924,597	-216,535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355,990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및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예방접종 : 43,948원*117,015건 = 5,142,576 · 60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9,937원*33,009건 = 988,200 ·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29,609원*4,306건 = 127,496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30,560원*1,358건 = 41,500 · HPV 1차 접종완료자 : 82,238원*260건 = 21,382 · HPV 미접종자 : 82,240원*875건 = 71,960 · 성인예방접종 : 30,369원*64,313건 = 1,953,126 · B형 주산기 감염예방 : 139,286원*70건 = 9,7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질병정책과-36878호(2022. 10. 10.)와 관련, 2023년 예산 감액 내시
- 예방접종 사업규모 2022년 249,001건에서 2023년 221,206건으로 감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
- 어린이(만12세 이하)·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민간병·의원(위탁의료기관)접종비 지원
 - 어린이 : ①BCG, ②B형간염, ③DTaP, ④IPV, ⑤DTaP-IPV, ⑥MMR, ⑦수두, ⑧일본뇌염(생백신) ⑨일본뇌염(사백신), ⑩Td, ⑪ Tdap ⑫뇌수막염, ⑬소아폐렴구균, ⑭A형간염 ⑮인유두종바이러스, ⑯소아인플루엔자 ⑰DTaP-IPV/Hib ⑱로타바이러스
 - 성 인 : ①어르신 인플루엔자, ②어르신 폐렴, ③장티푸스, ④신증후군출혈열
-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병·의원(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 간염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항체 검사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지침 시달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 2023.01. ~ 12. : 매월 2회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 지원 실시
 - 2023.01. ~ 12. :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연 1회 방문점검 실시
 - 2023.09. ~ 12.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61,364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382건
2021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65,543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212건
2022	- 관내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117,559건 -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131건

※ B형간염 항원 양성 산모 감소 추세(사업대상자 감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8,283,994	8,223,507	11,000	49,487	
2021	7,895,852	7,895,641	-	211	
2022	9,064,472	5,432,952	-	3,631,52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7급 김가현 간호8급 서화정	전화	4156 4157
-----	-------	------------	-----	----------------------	----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56,384건(코로나19 기본접종 및 동절기 추가접종)		
사업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집단면역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2항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7,733,555	7,733,028	527	3,066,687	-4,666,341	
국비		4,640,133	3,866,514	773,619	1,533,344	-2,333,170	
도비		928,027	1,159,954	-231,927	460,003	-699,951	
시비		2,165,395	2,706,560	-541,165	1,073,340	-1,633,2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66,687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의료및구료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 19,610원*156,384건	= 3,066,687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질병정책과-35700호(2022. 9. 28.) 관련, 2023년 예산 감액 내시
- 2023년 접종대상자 산출기준*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398,199건에서 156,384건으로 감소
* 2022년 6세 이상 인구수 → 2023년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60세 이상 4차 접종률)을 적용한 수로 변경
- 기초접종 및 3, 4차 위주의 접종에서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접종이 진행되어 접종대상자 변경됨
- 국·도·비 부담지시율 변경(22년: 국비60%, 도비12%, 시비28% → 23년: 국비50%, 도비15%, 시비35%)
-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19,610원/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 2023.01. ~ 12.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및 연 1회 방문점검 실시
- 2023.01. ~ 12.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및 교육 관리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153개소 - 관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실적: 348,458건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7,733,555	6,740,632	-	992,92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8급 서화정	전화	4157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80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240,500	565,290	-324,790	270,000	-295,29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0,500	565,290	-324,790	270,000	-295,29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70,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280명*964,000원 (22년도 평균 지원금액)	= 27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대상 : 도비 지원기준(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한 출산가정에 지원
 - 내용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대상자 추계 산식
 - '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자체) 월 평균 지원자 수 × 12월

* '22년 8월 말 지원 실적 : 187명 (월 평균 23명)

- '22년 월 평균 지원자 23명 × 12월 ≒ 280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자체 지원 계획 수립
- 2023.01. ~ 12. : 사업비 예탁 및 관리
-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관리
- 2023.1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셋째아 이상 지원) : 26명
202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셋째아 이상 지원) : 보조사업에 대상 기준 포함되어 자체사업 미추진
202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자) : 21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5,000	15,000	-	-	
2021*	-	-	-	-	
2022	240,500	220,000	-	20,500	

* 2021년 산모신생아지원사업(보조사업)에 시비사업 대상자(셋째아 이상 출산가정)가 포함되어 자체사업 미추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 6급 김기란	전화	4152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300명(예산기준 목표인원)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 인력) 지원으로 산모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507,400	1,617,400	1,507,400	110,000	1,507,400	0	
국비	1,055,000	0				0	
도비		1,132,000	1,055,000	77,000	1,055,000	0	
시비	452,400	485,400	452,400	33,000	452,4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7,400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159,540원*1,300명	= 1,507,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087(2022.9.29.)호와 관련,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년 가내시 감액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사업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 및 관리, 건강관리사 지원
- 2023.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924명)
202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331명)
202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20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예약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574,529	1,265,199	-	309,330	
2021	1,507,400	1,507,400	-	-	
2022	1,617,400	1,617,4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 6급 김기란	전화	4152
-----	-------	------------	-----	-----------	----	------

출산장려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716명		
사업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출산축하금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850,335	1,483,939	1,483,939	0	1,087,889	-396,0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50,335	1,483,939	1,483,939	0	1,087,889	-396,0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87,889	
출산장려사업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 출산축하금 지급(둘째아 이상) : 1,000,000원 * 1,002명 · 신생아 보험료 지원 : 401,350원 * 214명	= 1,002,000 = 85,889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출산친화적 분위기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신생아 보험 지원
 - 출산축하금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자정에 100만원 지급
 - 신생아보험 : 출산축하금 대상 중 셋째아 이상에게만 4세까지 신생아보험 지원
(‘20.7.1. 이전 출생아에 한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증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출산장려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12. : 사업추진 (매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적합 여부 조회 및 지급, 매월 신생아보험 대상자 현주소지 조회 및 보험사에 진출자 명단 통보)
- 2023.07. : 신생아보험 용역 계약
- 2023.12. : 출산장려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출산축하금: 2,322명 / 724,10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1,080명 / 163,133천원
2021	- 출산축하금: 1,630명 / 1,604,35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692명 / 199,461천원
2022	- 출산축하금: 1,218명 / 1,218,000천원 - 신생아 건강보험: 433명 / 129,78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029,526	887,234	-	142,292	
2021	1,850,335	1,803,811	-	46,524	
2022	1,483,939	1,347,787	-	136,15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960명		
사업목적	임신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962,000	1,880,000	1,560,000	320,000	1,320,000	-2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962,000	1,880,000	1,560,000	320,000	1,320,000	-2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20,000	
임신축하금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 임신축하금 : 500,000원*220명*12월	= 1,32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2023년 임신부(월: 220여명)대상 예산액 편성
- 임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에게 50만원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12. : 사업추진 (임신축하금 지급대상 적합 여부 조회 및 지급)
- mampanhansinseobiseo(온라인) 연계로 신청자 편의성 증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산부인과 안내문 배부
- 2023.12.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임신축하금 지원 : 4,161명
2021	- 2021.4.19. : 임신축하금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정부24)으로 확대 - 임신축하금 지원 : 3,884명
2022	- 임신축하금 지원 : 3,10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150,000	2,080,500	-	69,500	
2021	1,962,000	1,942,000	-	20,000	
2022	1,880,000	1,550,500	-	329,5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정혜현	전화	4153
-----	-------	------------	-----	----------	----	------

첫만남 이용권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872명(예산기준 목표인원)		
사업목적	출생아 대상 200만원 바우처 제공을 통해 초기 양육비용을 절감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 (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200만원을 출생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대상·방법·시기 및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6,600,000	5,742,000	858,000	5,744,000	2,000	
국비		4,950,000	4,292,000	658,000	4,308,000	16,000	
도비		495,000	435,000	60,000	430,800	-4,200	
시비		1,155,000	1,015,000	140,000	1,005,200	-9,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744,000	
첫만남 이용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지급 : 2,000,000원*2,872명	= 5,744,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7629(2022.9.19.)호와 관련,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3년 가내시 감액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 발표안에 따라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신규 추진
- 사업내용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모든 영유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일시금)로 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 홍보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집행 협조 요청
- 2023.01. ~ 12.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연중 접수 및 바우처 지급
- 2023.12. : 사업정산 및 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2022년 신규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559명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예탁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6,600,000	4,517,000	-	2,083,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간호 6급 김기란	전화	4152
-----	-------	------------	-----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00명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지연·포기를 방지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0,000	88,992	102,000	-13,008	60,000	-42,000	
국비	45,000	44,496	51,000	-6,504	30,000	-21,000	
도비	22,500	22,248	25,500	-3,252	15,000	-10,500	
시비	22,500	22,248	25,500	-3,252	15,000	-10,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600,000원*100명 =	6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087(2022.9.29.)호와 관련, 2023년 예산 감액 내시
- 지원 대상자 감소('21년 지원자 월평균 13명 → '22년 지원자 월평균 9명)
-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02. : 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사업 안내(문자 홍보)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90명
2021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56명
2022	- 미숙아 및 선천청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6,000	45,882	-	118	
2021	90,000	84,975	-	5,025	
2022	88,992	58,697	-	30,29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473명				
사업목적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구입·배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9조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400	3,400	3,400	0	3,060	-340	
국비	1,700	1,700	1,700		1,530	-170	
도비	850	850	850		765	-85	
시비	850	850	850		765	-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060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 2,077원*1,473개	= 3,06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1(2022.9.26.)호와 관련, 2023년 예산액 감액 내시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기록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자보건수첩 제작 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02.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02. : 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2023.01. ~ 12. : 모자보건수첩 배부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2021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2022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1,63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400	3,400	-	-	
2021	3,400	3,400	-	-	
2022	3,400	3,40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정혜현	전화	4153
-----	-------	------------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189건		
사업목적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일부)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57,000	655,000	655,000		1,458,417	803,417	
국비	478,500	0	-			0	
도비	239,250	491,000	491,000		1,093,813	602,813	
시비	239,250	164,000	164,000		364,604	200,6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458,41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 제외수정 시술비(신선배아) : 1,100,000원*140명*7회 = 1,078,000 · 제외수정 시술비(동결배아) : 500,000원*105명*5회 = 262,500 · 인공수정 시술비 : 300,000원*100명*3회 = 90,000 · 약제비 72,700원*384명 = 27,917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111(2022.10.31.)호와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지원 대상자 증가('21년 지원자 월평균 145명 → '22년 지원자 월평균 164명)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미지급 예상분 920,741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기능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대상으로 인공수정 총5회, 제외수정은 신선배아 총 9회, 동결배아 총 7회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 홍보
- 2023.12. : 사업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974건/ 인공수정 234건/ 약제비 402건)
2021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956건/ 인공수정 283건/ 약제비 383건)
2022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1,009건/ 인공수정 196건/ 약제비 36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46,000	445,996	-	4	
2021	957,000	956,987	-	13	
2022	655,000	642,031	-	12,969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정혜현	전화	4153
-----	-------	------------	-----	----------	----	------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명		
사업목적	선천시 난청의 조기 발견과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으로 장애 및 후유증 최소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300	2,400	2,400	0	2,400	0	
국비	1,150	1,200	1,200		1,200	0	
도비	575	600	600		600	0	
시비	575	600	600		6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400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검사비 지원 : 50,000원*4명 · 보청기 지원 : 2,200,000원*1명	= 200 = 2,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087(2022.09.29.)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선천시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02. : 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보청기 지원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1명(확진 검사비1)
2021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4명(선별 검사비2, 확진 검사비2)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 1명
2022	- 선천시 난청 검사비 지원 : 3명(확진 검사비3) - 선천시 난청 보청기 지원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000	977	-	23	
2021	2,300	2,300	-	-	
2022	2,400	977	-	1,42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95명		
사업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1,000	81,400	70,000	11,400	76,000	6,000	
국비	45,500	40,700	35,000	5,700	38,000	3,000	
도비	22,750	20,350	17,500	2,850	19,000	1,500	
시비	22,750	20,350	17,500	2,850	19,000	1,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00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50,000원*4명 =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200,000원*19명 =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1,000,000원*18명*4회(분기별) =	200 3,800 72,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087(2022.9.29.)호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식이 지원금액 증가
 - ↳ '21년 1건당 평균 800,000원 → '22년 1건당 평균 1,000,000원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검사비(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식이 및 의료비(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의료비·특수식이 지원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4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30명
2021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3명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26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67명
2022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 11명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 5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4,364	39,068	-	5,296	
2021	91,000	90,955	-	45	
2022	81,400	66,058	-	15,34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6명				
사업목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200	7,200	7,200	0	7,200	0	
국비	3,600	3,600	3,600		3,600	0	
도비	1,800	1,800	1,800		1,800	0	
시비	1,800	1,800	1,800		1,8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200,000원*6명	= 7,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1(2022.9.26.)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임신 1회당 최대 1,200천원)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안내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3명
2021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6명
2022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600	3,600	-	-	
2021	7,200	7,200	-	-	
2022	7,200	4,400	-	2,8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60명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 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0,000	72,000	72,000	0	65,200	-6,800	
국비	35,000	36,000	36,000		32,600	-3,400	
도비	17,500	18,000	18,000		16,300	-1,700	
시비	17,500	18,000	18,000		16,300	-1,7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5,20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407,500원*160명	= 65,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1(2022.9.26.)호와 관련, 2023년 예산 감액 내시
- 지원 대상자 감소('21년 지원자 월평균 16명 → '22년 지원자 월평균 13명)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조기 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임산부에게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의료비 지원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250명
2021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199명
2022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14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1,400	69,386	-	2,014	
2021	70,000	66,183	-	3,817	
2022	72,000	63,183	-	8,81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600명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26,000	1,458,000	574,000	884,000	1,000,000	426,000	
국비	163,000	729,000	287,000	442,000	500,000	213,000	
도비	81,500	364,500	143,500	221,000	250,000	106,500	
시비	81,500	364,500	143,500	221,000	250,000	106,5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625,000원*1,600명	= 1,00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087(2022.9.29.)호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경기도 건강증진과-11112(2022.7.22.)호 관련,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22.8.1.~)
 - 가형(기저귀) 64천원 → 70천원
 - 나형(기저귀 및 조제분유) 150천원 → 160천원
 - 다형(조제분유 추가) 86천원 → 90천원
- 기저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기저귀 지원(70천원/월)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90천원/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바우처 지원 대상자 접수·결정·통보 및 지원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207명
2021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757명
2022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3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99,139	399,139	-	-	
2021	326,000	326,000	-	-	
2022	1,458,000	574,000	-	884,0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40명(의료급여수급권자)		
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수검 비용지원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150	3,820	3,820	0	4,200	380	
국비	2,520	3,056	3,056		3,360	304	
도비	315	382	382		420	38	
시비	315	382	382		420	3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 30,000원*140명	= 4,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0(2022.9.26.)호와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수 증가
 - 대상자 '21년 157명 → '22년 170명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횟수 : 총 11회(일반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02. : 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2023.01. ~ 12. : 사업대상자 검진 독려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85명
2021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119명
2022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95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757	3,757	-	-	
2021	3,150	3,150	-	-	
2022	3,820	3,82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32명		
사업목적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를 위한 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 발견 및 후유증 최소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중간생략)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240	8,650	8,650	0	9,200	550	
국비	7,392	6,920	6,920		7,360	440	
도비	924	865	865		920	55	
시비	924	865	865		920	5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9,2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287,500원*32명	= 9,2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0(2022.9.26.)호와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경기도 건강증진과-23432(2021.12.30.)호 관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검사비 지원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28명
2021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42명
2022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2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029	4,934	-	95	
2021	9,240	7,586	-	1,654	
2022	8,650	4,457	-	4,19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70명(의료급여수급권 대상자)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수검 독려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250	1,250	1,250	0	1,350	100	
국비	1,000	1,000	1,000		1,080	80	
도비	125	125	125		135	10	
시비	125	125	125		135	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 1,250원*1,080개	= 1,3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860(2022.9.26.)호와 관련, 2023년 예산 증액 내시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수 증가('21년 대상자 157명 → '22년 대상자 170명)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운영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023.12.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1,000개
2021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1,000개
2022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 1,000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250	1,250	-	-	
2021	1,250	1,250	-	-	
2022	1,250	1,25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의료기술8급 권여민	전화	4155
-----	-------	------------	-----	------------	----	------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확보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1,200	36,000	36,000	0	37,144	1,144	
국비	5,600	18,000	18,000		18,572	572	
도비	2,800	9,000	9,000		9,286	286	
시비	2,800	9,000	9,000		9,286	28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114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1명) · 기 본 급 : 89,680원*251일(12월)*1명 = 22,509 · 유급휴일수당 : 89,680원*66일(12월)*1명 = 5,918 · 명절휴가비 : 500,000원*1명 = 500 · 4대보험료 등 : 32,335,714원*14%*1명 = 4,527 · 출장여비 : 20,000원*50일*1명 = 1,000 · 퇴직금 : 89,680원*30일*1명 = 2,69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778(2022.10.11.)호와 관련, 2023년 예산액 증액 내시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 필요
- 2023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으로 증액(22년 10,860원 대비 3.2% 인상하여 11,210원으로 변경)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으로 12개월 근무 및 퇴직금 부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사업계획 수립
- 2023.01. ~ 12.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업무 및 그 외 모자보건사업 추진
- 2023.12. : 사업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고 인건비 1명
2021	-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고 인건비 1명
2022	- 모자보건사업의 업무보조 인건비 2명 (8개월/6개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1,200	11,152	-	48	
2021	11,200	10,534	-	665	
2022	36,000	27,685	-	8,31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보건9급 정혜현	전화	4153
-----	-------	------------	-----	----------	----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900명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를 도모하여 합병증예방과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김포시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 제2항 제7호, 제3항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환자의 본인부담금 약제비는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90,000	50,400	50,400	0	68,400	18,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0,000	50,400	50,400	0	68,400	18,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8,400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 3,000원*1,900명*12월	= 68,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가족 지지체계 감소와 경제력 미약으로 적기 적절한 치료관리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당뇨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65세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30일 기준 각 질병 당 3,000원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의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3. 01. ~ 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추진
- 2023. 0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상반기 홍보
- 2023. 07.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하반기 홍보
- 2023. 1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2,322명 / 5,954건
2021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327명 / 4,742건
2022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 1,160명 / 3,558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86,400	62,926	-	23,474	
2021	50,400	50,400	-	0	
2022	50,400	37,275	-	13,12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혜진	전화	4142
-----	-------	------------	-----	----------	----	------

안 검진 기본검사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500명		
사업목적	고혈압, 당뇨병환자 대상으로 사전 안 검진을 통한 안질환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000	5,000	5,000	0	5,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000	5,000	5,000	0	5,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안 검진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안 기본검사비 지원 : 10,000원*500명	= 5,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안 검진을 통한 녹내장, 백내장 및 실명 등의 안질환 조기 발견
- 5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안과 기본검사 비용 지급(1인당 1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3. 01. ~ 12.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 2023. 02.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상반기 홍보
- 2023. 07.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하반기 홍보
- 2023. 12.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 : 500명
2021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 : 500명
2022	- 고혈압·당뇨병환자 안 검진비 지원 : 35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000	5,000	-	0	
2021	5,000	5,000	-	0	
2022	5,000	3,500	-	1,500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장미경	전화	4141
-----	-------	------------	-----	------------	----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지역 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의 수행평가를 위한 보건 기초자료 및 통계 생산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항~④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69,466	69,472	69,472	0	69,472	0	
국비	34,733	34,736	34,736		34,736	0	
도비		0				0	
시비	34,733	34,736	34,736		34,736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69,472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위탁운영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급식비 : 8,000원*11명*5회 = 440 · 지역사회건강조사 회의 간식비 : 3,000원*10명*2회 = 60	소계 = 500	
	307-05 민간위탁금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 68,972,000원 = 68,972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138(2022.10.31.)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 단위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2. ~ 03. : 지역사회건강조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 2023. 05. : 민간위탁금 사업비 지급
- 2023. 06. : 지역사회건강조사원 모집 및 면접, 사전교육
- 2023. 08. ~ 10.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2023. 09. :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보조금 집행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4명 - 조사지표 : 18개 영역 142문항, 121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1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1명 - 조사지표 : 18개 영역 163문항, 124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2022	- 조사자수 : 19세이상 성인 915명 - 조사지표 : 19개 영역 138문항, 112개 산출지표 - 조사내용 : 흡연율, 음주율, 정신건강, 예방접종, 보건기관 이용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69,466	69,466	-	-	
2021	69,466	69,466	-	-	
2022	69,472	69,472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의료기술6급 장미경	전화	4141
-----	-------	------------	-----	------------	----	------

만성질환예방관리(우수사례과정 운영비)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지역의 우수건강지표 발굴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양호하게 변화하는 건강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6조 제3항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960	1,960	1,960	0	1,880	-80	
국비	980	980	980		940	-40	
도비		0				0	
시비	980	980	980		940	-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80	
만성질환예방관리 (우수사례과정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1,880,000원*1명	= 1,88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138(2022.10.31.)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필요성 : 보건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주요사업내용 : 우수건강지표와 보건사업과의 연관성 정리 및 효과분석, 지역 통계 활용 기법 이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사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동의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02. : 교육대상자 선발
- 2023. 03. ~ 10. : 교육파견
- 2023. 11. : 시·도별 자체 평가대회 참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1	- 만성질환예방관리(우수사례과정) 교육 수료 : 1명
2022	- 만성질환예방관리(우수사례과정) 교육 수료 :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1,960	1,960	-	-	
2022	1,960	1,960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142
-----	-------	------------	-----	----------	----	------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명				
사업목적	지역건강 통계 생산·관리 및 보건사업 기획·추진에 관한 역량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6조 제3항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2,860	2,860	
국비		0			1,430	1,430	
도비		0				0	
시비		0			1,430	1,43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6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201-01 사무관리비	· 만성질환예방관리 전문교육 : 2,860,000원*1명	= 2,86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110(2022.10.31.)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필요성 : 지역건강통계 생산 및 관리 역량 향상
- 주요 사업내용 : 지역건강통계 활용을 통한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관리 능력 향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02. : 교육대상자 선발
- 2023. 03. ~ 10. : 교육파견
- 2023. 11. : 시·도별 자체 평가대회 참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혜진	전화	4142
-----	-------	------------	-----	----------	----	------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600가구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000	54,680	54,680	0	4,284	-50,396	
국비		0	7,000			-7,000	
도비		0				0	
시비	5,000	47,680	47,680	0	4,284	-43,39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284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공용폰 통신요금 : 42,000원*3대*12개월 · 태블릿PC 통신요금 : 21,000원*11대*12개월	= =	1,512 2,772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스마트폰 활용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영상통화, ZOOM 교육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태블릿PC 기반의 서식 입력 및 건강관리 실시, 대상자 관리, 건강면접조사, 방문일정관리 등의 기능을 모바일 업무환경(MPHIS)에 구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2.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태블릿 PC 개통
- 2023. 01. ~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2023. 02. :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
- 2023. 03. : MPHIS 사용자 교육
- 2023.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3,317가구, 재활장비대여 : 237건
2021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2,703가구, 재활장비대여 : 280건
2022	-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 2,320가구, 재활장비대여 : 240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000	4,990	-	10	
2021	5,000	4,990	-	10	
2022	67,822	64,949	-	2,87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142
-----	-------	------------	-----	----------	----	------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200가구		
사업목적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및 가족의 환자 간호 등에 따른 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암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1호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250	5,250	5,250	0	5,250	0	
국비		0				0	
도비	2,625	2,625	2,625		2,625	0	
시비	2,625	2,625	2,625		2,625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250	
암환자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	307-01 의료및구료비	· 외용 소염진통제 : 2,000원*200명 · 특수영양식이 : 25,000원*194명	= 400 = 4,85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06(2022.09.30.)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 건강관리 및 심리지지와 상담, 의료물품(외용 소염진통제, 특수영양식이 등) 지원, 지역의 보건·복지 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사업계획서 수립
- 2023. 02. : 의료지원물품 구입
- 2023. 01. ~ 12.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 2023.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310명, 건강관리 : 2,124회, 의료물품지원 200명
2021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278명, 건강관리 : 1,249회, 의료물품지원 333명
2022	- 재가암환자등록·관리 : 216명, 건강관리 : 906회, 의료물품지원 25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250	5,249	-	1	
2021	5,250	5,245	-	5	
2022	5,250	5,199	-	51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142
-----	-------	------------	-----	----------	----	------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750가구		
사업목적	의료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52,672	67,822	53,822	14,000	53,448	-374	
국비	26,336	33,911	26,911	7,000	26,724	-187	
도비		0				0	
시비	26,336	33,911	26,911	7,000	26,724	-18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3,448		
방문건강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재료, 사무용품 등 구입 : 250,000원*4회	= 1,000		
		·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 1,000원*2,048개	= 2,048		
		· 방문건강관리사 피복비(하복·동복) : 240,000원*8명	= 1,920		
		소계 =	4,968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독거노인 햇볕썩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독거노인 걸기 프로그램 간식비 : 3,000원*45명*8회	= 1,080		
	소계 =	1,080			
307-01 의료및구료비	· 황사마스크 : 250원*4,000개		= 1,000		
	· 의료지원품(에스겔 등) : 2,900원*4,000개*4회		= 46,400		
	소계 =	47,4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07(2022.09.30.)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건강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 취약계층 발굴·등록, 기초건강 및 만성질환관리,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수립
- 2023. 02. :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
- 2023. 01. ~ 12. :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 2023.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방문등록관리 : 3,191가구, 건강관리 : 15,072회, 의료물품 지원 : 5,061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2,351건/보건소 외 2,817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홍보물품 배부 : 5,794건
2021	- 방문등록관리 : 2,703가구, 건강관리 : 11,449회, 의료물품 지원 : 7,182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701건/보건소 외 1,706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홍보물품 배부 : 9,054건
2022	- 방문등록관리 : 2,320가구, 건강관리 : 8,093회, 의료물품 지원 : 5,337명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보건소 내 702건/보건소 외 734건 -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대응 건강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물품 배부 : 9,517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52,168	52,167	-	1	
2021	52,672	52,668	-	4	
2022	67,822	67,159	-	66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해진	전화	4142
-----	-------	------------	-----	----------	----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업규모	120명			
사업목적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 ¹⁾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81,696	0	81,696	76,284	76,284	
국비		40,848		40,848	38,142	38,142	
도비		0				0	
시비		40,848		40,848	38,142	38,14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6,284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본급 : 89,680원*1명*170일 = 15,246 · 유급수당 : 89,680원*1명*45일 = 4,036 · 명절수당 : 500,000원*1명 = 500 · 4대보험료 : 22,728,570원*14%*1명 = 3,182 소계 = 22,964		
	201-01 사무관리비	· 차량임차료 : 1,200,000원*12개월 = 14,400 · AI스피커 사용료 : 31,900원*65대*12개월 = 24,882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 : 2,000원*7,019개 = 14,038 소계 = 53,32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07(2022.09.30.)호와 관련 가내시 통보
- 기존 대면 위주의 방문건강관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
- 비대면 건강관리 컨설팅으로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스마트 기기 디바이스 제공(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
- 오늘의 건강 APP 실행, 미션 제공,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공

1)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1.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규대상자 등록 및 사전스크리닝
- 2023. 01. ~ 11. :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 2023. 06. : 신규대상자 등록 및 사전스크리닝
- 2023. 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2	- AI·IoT 시범사업 등록·관리 :99명 - 디바이스(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 제공 : 388개 - 건강관리 서비스 : 2,950회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2	81,696	49,089	-	32,607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장	장미경	담당자	간호8급 이혜진	전화	4142
-----	-------	--------	-----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기간	2023. 01. 0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950명(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약 복용자)		
사업목적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악화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98,310	266,718	295,746	-29,028	286,718	-9,028	
국비	149,155						
도비	22,373	153,363	170,054	-16,691	164,863	-5,191	
시비	126,782	113,355	125,692	-12,337	121,855	-3,83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86,71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매치료관리비(950명)	= 286,71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52(2022.10.4.)호 관련,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가내시 증액
- 대 상 : 치매분류코드(F00~03, G30)로 처방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김포시민(초로기 치매 포함)
- 지원액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절차
 - 대상자 :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 보건소 : 지원 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비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금액 한도 내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1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작(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
- 2010. 11. : 보건소장 인정자(CDR 1점이하, GDS 5단계이하,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대 지원
- 2013.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지원 확대
- 2016. : 지원 대상자의 정기 소득 기준 조사 매 2년마다 실시
- 2017.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확대
- 2021. : 초로기 치매 환자 지원 가능

○ 향후계획

- 2023.0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계획수립
- 2023.01. ~ 12. : 대상자 지원 자격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및 분기별 치매치료관리비 예탁
- 2023.05. ~ 06. :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3.11. ~ 12. :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정기 소득 재조사
- 2023. 1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975명 / 4,169건
202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004명/ 4,696건
2022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954명 / 5,71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93,000	193,000	-	-	-
2021	298,310	298,310	-	-	-
2022	266,718	266,718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김한나	전화	4168
-----	-------	------------	-----	----------	----	------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3. 01. 0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1개소(698.27㎡), 60세 이상 인구 70,285명(고촌읍, 동지역)		
사업목적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85,831	287,644	287,644	0	347,732	60,088	
국비	228,665	230,115	230,115		278,186	48,071	
도비	8,575	8,629	8,629		10,432	1,803	
시비	48,591	48,900	48,900		59,114	10,21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47,732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치매가족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 150,000원*3회*10월 = 4,500		
		· 가족카페 및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비 : 50,000원*4회*12월 = 2,400		
		· 치매인식개선 지하철 광고 : 550,000원*6월 = 3,300		
		· 치매 조기검진 홍보물 구입 : 2,000원*4,000개 = 8,000		
		· 맞춤형 치매돌봄 사례관리 지원물품 : 9,000원*20명*12월 = 2,160		
		· CERAD-K 전자검사 앱 구입 : 6,500원*1,300명 = 8,450		
		· CIST 제작 구입비(치매선별검사지) : 300원*5,000매 = 1,500		
		· 사업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40,000원*30개 = 1,200		
		· 사업홍보 리플렛(조기검진, 예방 등) : 1,000원*3종*3,000개 = 9,000		
		· 치매 홍보 탁상 달력 : 3,000원*1,600개 = 4,800		
		· 치매예방 온오프라인 활용 교육물품 구입 : 2,000원*4,000개 = 8,000		
		·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구입 : 280,000원*50대 = 14,000		
		· 치매극복선도 학교, 단체 운영 : 1,000,000원*4개소 = 4,000		
		· 인지 예방·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 7,000원*380명*12월 = 31,920		
		· 협의체 운영 참석 수당 : 80,000원*8명*2회 = 1,280		
		· 직원 조기검진용 피복비 : 50,000원*13명*1회 = 650		
		· 소모품(토너, 인쇄용지, 사무용품)구입 : 250,000원*12월 = 3,000		
		· 사업추진 차량 임대료 : 740,000원*12월 = 8,880		
		· 정수기 임대료 및 관리 : 40,000원*2대*12월 = 960		
		· 비데 임대료 및 관리 : 20,000원*3대*12월 = 720		
		소계 =	118,720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관리비(수도, 전기, 청소용역 등) : 2,100,000원*12월 = 25,200		
		· 조기검진 안내 등 우편발송 : 500,000원*4분기 = 2,000		
	· TV유선방송 및 공용폰 사용료 : 90,000원*12월 = 1,080			
	· 센터 시설, 장비 유지관리 : 200,000원*12월 = 2,400			
	· 센터 간판 교체 및 보수 : 1,000,000원*1회 = 1,000			
	· 관용차량 유류비 : 90,000원*2대*12월 = 2,160			
	· 환경정비 관리 용품 : 200,000원*12월 = 2,400			
	· 센터 무인경비시스템 : 140,000원*12월 = 1,680			
			소계 = 37,920	
	201-03 행사운영비	· 치매극복의날 행사 운영 : 5,000,000원*1회 = 5,000		
· 쉽터 문화체험 및 가족의 밤 행사 운영 : 650,000원*2회 = 1,300				
		소계 = 6,300		
202-01 국내여비	· 국내여비 : 40,000원*8명*12월 = 3,84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가족카페 및 자조모임 운영 : 380,000원*12월 = 4,560			
	· 가족의 밤 행사 급량비 : 8,000원*150명 = 1,200			
		소계 = 5,760		
301-14 기타보상금	· 협력 의사 수당 : 343,000원*7회*12월 = 28,812			
	· 인지 예방·강화프로그램 강사비 : 70,000원*40회*12월 = 33,600			
	· 가족교육·힐링 프로그램 강사비 : 70,000원*3회*10월 = 2,100			
		소계 = 64,512		
307-01 의료및구료비	· 치매 감별 검사비 : 80,000원*130명 = 10,400			
	·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6종) : 8,300,000원*12월 = 99,600			
	· 혈당 소모품 등 : 170,000원*4분기 = 680			
		소계 = 110,68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6174(2022.10.17.)호 관련, 전년도 예산 대비 가내시 증액
- 인지 예방·강화 프로그램 확대(주 2회 → 주 10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호물품 구매비용 증가
- 치매 예방, 조기 검진, 돌봄, 가족 지원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과 가족 부담 경감
-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 노인 대상 치매 예방관리 교육 홍보로 치매 발생 감소 및 진행 지연
- 치매안심센터 청사·공공 운영 및 전 시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의결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17. 08. 30. : 김포시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
- 2017. 11. ~ 2018. 05. : 건물 매입, 리모델링
- 2018. 05. 30. : 김포시치매안심센터 개소
- 2019. 09. 23. :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 신설(북부권 경증치매 쉼터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

○ 향후 계획

- 2023. 01. ~ 02. :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 2023. 01. ~ 12. : 치매통합관리사업 추진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예방·인지 프로그램, 가족 지원, 경증치매 쉼터운영, 인식개선사업 등)
- 2023. 09. :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 2023. 11. : “지역사회치매관리올”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 2023. 12. : 치매가족의 밤 행사 및 사업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2,017명 / 환자 등록관리: 1,455명 / 진단·감별검사: 292명·190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65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2종, 7,886건(실인원 755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130명 / 지문등록: 124명 / 배회감지기 지원: 25명(누적)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84회(914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24회(161명) - 치매가족 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15회(124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3개소), 치매파트너 양성: 588명
2021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2,770명 / 환자 등록 관리: 1,644명 / 진단·감별검사: 366명·131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70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0종, 3,169건(실인원 323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7명 / 지문등록: 162명 / 배회감지기 지원: 43명(누적)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07회(506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82회(400명) - 치매가족 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36회(309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1개소), 치매파트너: 577명, 파트너플러스: 160명
2022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2,942명 / 환자 등록 관리: 1,785명 / 진단·감별검사: 303명·99명 -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14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6종, 2,286건(실인원 359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42명 / 지문등록: 96명/ 배회감지기 지원: 52명(누적) - 경증치매·가가호호 인지강화프로그램: 90회(362명) / 경도인지장애·정상군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100회(1,227명) - 치매 가족 교실, 치매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43회(370명) - 치매인식개선: 치매극복선도학교(2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1개소), 치매파트너: 692명, 파트너플러스: 8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53,265	248,495	-	4,770	
2021	285,831	264,760	-	21,071	
2022	287,644	209,346	-	78,29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간호8급 김한나	전화	4167 4168
-----	-------	------------	-----	----------------------	----	--------------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기간	2023. 01. 01. ~ 2023. 12. 31.(연중)	사업위치	사우중로 73번길 52
사업규모	치매공공후견인 3명(피후견인 3명 지원)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존엄성 보장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4,898	6,000	6,000	0	7,200	1,200	
국비	3,918	4,800	4,800		5,760	960	
도비	147	180	180		216	36	
시비	833	1,020	1,020		1,224	20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200	
치매공공후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 : 50,000원*4회 = 200	200	
		· 치매공공후견 상해보험가입비 : 200,000원*1회 = 200	200	
		· 치매공공후견 홍보 책자 제작 : 500원*400개 = 200	200	
		소계 =	600	
	301-14 기타보상금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 200,000원*2명*12월 = 4,800 · 200,000원*1명*9월 = 1,800	4,800 1,800	
		소계 =	6,6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5252(2022.10.4.)호 관련, 전년도 예산 대비 가내시 증액
- 치매 공공후견인 추가(2인 → 3인)로 인한 활동비 등 증액
- 후견심판 청구 등 절차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1인 지원시 월20만원)
-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치매노인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 등 사무처리
-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01.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3.01. ~ 03. : 치매공공 피후견인 신규 발굴【피후견인1인 지원 기간(3년)만료】
- 2023.01. ~ 12. : 사업 추진【매월 후견인(3인) 활동 내역점검 및 사례 회의, 활동비 지급】
- 2023.10. ~ 11. :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 및 후견 사무 보고서 법원 제출
- 2023.12. :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공공후견 심판결정 : 1건(공공후견 활동 2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1	- 공공후견 심판결정 : 0건(공공후견 활동 2명, 피후견인 지원 3명)
2022	- 공공후견 심판결정 : 1건(공공후견 활동 3명, 피후견인 지원 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2,700	2,661	-	39	
2021	4,898	4,690	-	208	
2022	6,000	4,732	-	1,268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이청희	담당자	간호8급 박다윗	전화	4167
-----	-------	------------	-----	----------	----	------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북부보건과



북부권 청사유지 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3,772.8㎡(1,141평) / 지하2층 ~ 지상 4층				
사업목적	북부권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및 청사 유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76,200	76,200	76,200	0	54,080	-22,12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76,200	76,200	76,200	0	54,080	-22,12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080	
북부권 공공보건의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청사 사무관리 ·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1,116,000원*5회 = 5,800 · 정수기 임차료 58,000원*8대*12월 = 5,568 · 공기청정기 임차료 27,000원*10대*12월 = 3,240 · 비데 임차료 16,000원*8대*12월 = 1,536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451,000원*12월 = 5,412 ◎사무실 임차료 3,850,000원*1월 = 3,850	16,144	25,406
	201-02 공공운영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 1,000,000원*4회 = 4,000 ◎승강기 유지보수비 : 150,000원*2대*12월 = 3,600 ◎전자경비시스템 운영 : 800,000원*12월 = 9,600 ◎청사 의무소독비 : 302,000원*12월 = 3,624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 500,000원*12월 = 6,000 ◎임차 건물 관리비 : 1,200,000원* 1월 = 1,200 ◎임차 건물 전기요금 : 650,000원* 1월 = 650	28,674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북부보건과 청사 개청에 따른 예산 필요
- 청사 사무 관리 및 청사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2023. 12.: 북부보건과 청사 유지 및 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사무관리비(임차료, 기자재, 소모품 등) : 45,653천원(집행률 92.7%)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1,212천원(집행률 72.1%) - 자산및물품취득비(차량 등) : 43,058천원(집행률 95.8%)
2021	- 사무관리비(임차료, 기자재, 소모품 등) : 47,974천원(집행률 95.9%)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4,147천원(집행률 92.2%)
2022	- 사무관리비(임차료, 기자재, 소모품 등) : 41,199천원(집행률 82.4%)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유지관리비) : 20,388천원(집행률 77.8%)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23,610	109,923	-	13,687	
2021	76,200	72,121	-	4,079	
2022	76,200	61,587	-	14,613	10.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최계숙	담당자	행정6급 이서현	전화	4192
-----	-------	------------	-----	----------	----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180명(만19~65세 지역주민, 만성질환 유소견자 우선 대상 선정)		
사업목적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편의성 증진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지도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80,550	80,322	80,322	0	82,456	2,134	
국비	40,275	40,161	40,161	0	41,228	1,067	
도비	0	0	0	0	0	0	
시비	40,275	40,161	40,161	0	41,228	1,067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82,456	
사업명 입력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211
		· 기본급 89,680원*2명*185일	= 33,182	
		· 유급휴일수당 89,680원*2명*48일	= 8,610	
		· 명절휴가비 500,000원*2명*1회	= 1,000	
		· 시간외근무수당 16,815원*2명*32시간	= 1,077	
		· 4대 보험료 21,933,520원*2명*14%	= 6,142	
		◎피복비 100,000원*2명	= 200	
	201-01 사무관리비	◎체중계, 활동량계, 운동소모품 등	= 22,000	26,200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 4,200	
	301-14 기타보상금	◎우수참여자 온누리상품권 포상 50,000원*20명	= 1,000	1,000
	의료및구료비 307-01	◎POCT 검사 소모품 8,000원*200건*3회	= 4,800	5,045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검사 소모품	= 245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4649(2022.09.22.)호 관련, 2023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에게 모바일앱을 통한 24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를 통해 운동량, 생활습관 분석 및 상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2.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추진계획 수립, 전문인력 채용
 - 2023. 2. ~ 2023. 3. :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
 - 2023. 3. ~ 2023.10. : 대상자검진 및 전문상담, 모바일앱 모니터링
 - 2023.11. ~ 2023.12. : 사업평가 및 추후 관리서비스 제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2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26건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495건
2021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6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50건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1,996건
2022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등록 : 177명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체성분 검사 : 316건 - 건강/영양/운동 전문가 집중상담 : 2,926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43,780	39,036	-	4,744	
2021	80,550	76,243	-	4,307	
2022	80,322	52,023	-	28,29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보건관리팀장 최계숙	담당자	간호7급 정찬희	전화	4193
-----	-------	------------	-----	----------	----	------

진료검진사업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북부권 김포시민		
사업목적	북부보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검사실 내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가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1,326,923	0	1,326,923	54,908	54,908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1,326,923	0	1,326,923	54,908	54,908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4,908	
진료검진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진료사업 업무대행 인건비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대체인력 120,000원*3명*17일	= 6,120	6,120
	201-01 사무관리비	◎진료검진사업 소모품비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1,000,000원 ◎검사실 운영 ·검사실 폐수 처리비 1,540,000원 ·검체 운송 수수료 30,000원*30회 ◎방사선실 운영 ·방사선 선량측정기 판독료 16,500원*1명*4회 ·진료 및 검진 가운 구입 51,400원*30벌 ◎민원실 운영 ·신용카드 후취정산 수수료 50,000원*12월 ·민원양식 제작비 90원*30,000매 ·민원실 행정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0,000원*12월	= 1,000 = 2,440 = 1,540 = 900 = 1,608 = 66 = 1,542 = 4,500 = 600 = 2,700 = 1,200	9,548

진료검진사업	307-01 의료 및 진료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 · 검사용소모품 20,000원*40종*10회 = 8,000 · 세균검사시약 60,000원*45종*6회 = 16,200 · 기타검사시약 100,000원*18종*3회 = 5,400 ◎방사선실 X-ray 판독비 1,000원*50건*20회 = 1,000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센터 기자재 구입 1,000,000원 = 1,000 ◎진료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1,000,000원 = 1,000	=	29,600	32,600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선실 방화벽 설치 6,050,000원 = 6,050 ◎민원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기 295,000원*2대 = 590	=	6,64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북부보건과 청사 이전에 따른 진료검진사업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12. : 진료검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진료검진팀장 양은정	담당자	의료기술9급 양은지	전화	4222
-----	-------	------------	-----	------------	----	------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북부권 읍·면 경로당(마을회관) 등 18개소		
사업목적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성과 체력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37,500	37,500	0	40,540	3,04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37,500	37,500	0	40,540	3,04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40,540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현수막 제작 : 18개소	= 540	
	301-14 기타보상금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강사비 · 50,000원*8명*100회	= 40,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증액 및 현수막 제작
-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 생활터로 찾아가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사업계획 수립
- 2023. 3. ~ 2023. 4.: 강사 채용, 운동 프로그램 참여 마을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3. 5. ~ 2023.12.: 운동 프로그램 실시 및 혈압·당뇨 등 건강체크, 건강교육 실시
- 2023. 12.: 만족도 평가 및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사업중단
2021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사업중단
2022	-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 422회/4,95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750	750	-	-	
2021	-	-	-	-	
2022	37,500	15,800	-	21,7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건강생활팀장 강순미	담당자	보건6급 강순미	전화	4196
-----	-------	------------	-----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출생아 3,612명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1조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1,791,000	1,806,000	1,806,000	0	1,806,000	0	
국비	0	0	0	0	0	0	
도비	1,253,700	1,264,200	1,264,200	0	1,264,200	0	
시비	537,300	541,800	541,800	0	541,800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806,000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500,000원 * 3,612명	= 1,806,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6886(2022.10.26)호 관련,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가내시
-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산가정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12.
 - 매주 신청자 접수 : 읍·면·동 협조
 - 대상자 자격 및 중복청구 여부 확인
 - 지역화폐 지급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2023. 3. ~ 2023.12. : 분기별 경기도에 지원현황 실적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3,009명
2021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3,421명
2022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2,75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571,000	1,504,500	-	66,500	
2021	1,791,000	1,710,500	-	80,500	
2022	1,806,000	1,378,500	-	427,50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건강생활팀장 강순미	담당자	간호8급 이정민	전화	4197
-----	-------	------------	-----	----------	----	------

북부지역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북부지역 5개 읍, 면 만60세 이상 주민		
사업목적	치매상담,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205,004	200,096	200,096	0	210,268	10,172	
국비	164,003	160,077	160,077	0	168,214	8,137	
도비	6,150	6,003	6,003	0	6,308	305	
시비	34,851	34,016	34,016	0	35,746	1,73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10,268	
북부지역 치매통합관리 체계 강화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단기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89,680원 * 169일 = 15,156 · 유급휴일수당 89,680원 * 45일 = 4,036 · 명절휴가비 500,000원 * 1회 = 500 · 교육비, 여비 등 60,000원 * 8월 = 480 · 피복비 100,000원 = 100 · 4대 보험료 19,691,520원 * 14% = 2,757		23,029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및 사업 차량 임차료 = 19,408 ◎인지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7,000원 * 20회 * 10월 = 1,400 ◎인지선별검사지 등 제작 500원 * 3,000매 = 1,500 ◎치매예방교실 재료구입 150,000원 * 10월 = 1,500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 19,990 ◎CREAD-K전자검사 앱구입 6,500원 * 400명 = 2,600 ◎홍보물품 및 인쇄물 제작 = 18,676		65,074
	201-02 공공운영비	◎조기검진 안내문 등 우편요금 2,000,000원 * 2회 = 4,000 ◎관용차량 유류 및 관리 100,000원 * 2대 * 10월 = 2,000		6,000

201-03 행사운영비	◎치매안심마을 행사 등 1,000,000원 * 1회 ◎인지프로그램 및 활동 체험비 25,000원 * 10명 * 20회	= 1,000 = 5,000	6,000
202-01 국내여비	◎치매관리사업 추진 여비 100,000원 * 6명 * 12월	= 7,200	7,2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4,000원 * 10명 * 100회 ◎가족카페 운영 70,000원 * 12월 ◎행사운영 다과 및 급식비 150,000원 * 4회	= 4,000 = 840 = 600	5,440
301-14 기타보상금	◎협력의사 수당 1,372,000원 * 12월 ◎인지프로그램 등 강사비 70,000원 * 20회 * 10월	= 16,464 = 14,000	30,464
307-01 의료 및 구료비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9종) ◎검사 의료 소모품	= 66,741 = 320	67,061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6174(2022.10.17.)호 관련, 2023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
- 치매조기검진, 상담, 환자 등록관리, 치료비지원, 예방교육, 홍보 및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 및 치매 악화지연을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홍보
 - 2023. 2. ~ 2023. 3.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 2023. 1. ~ 2023.12. : 치매통합관리 사업 추진
 - 2023.11. : 정부합동평가 자료 작성
 - 2023.12. :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1,152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854명 / 진단감별검사: 106명·38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8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종, 1,890건, 405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42명 / 지문등록: 44명 / 배회감지기: 25명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73회 291명 - 환자 가족교육(헤아림 가족교실): 8회 25명 / 돌봄부담분석 및 가족상담: 29회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725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통진읍 동을산리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경로당 내부게시판, 화장실 안심벨, 치매예방수칙 안내판 설치, 인식개선 마을 벽화사업 등) · 안심마을 특화사업 추진(안심리더 양성 교육 9회 78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1,140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904명 / 진단감별검사: 148명·58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44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종, 1,324건, 247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63명/ 지문등록: 79명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95회 547명 -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30회 65명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2,151명 -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하성면 마곡리 ·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결성 ·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경로당 내부게시판, 치매예방수칙 안내판 설치, 인식개선 마을 벽화사업 등)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 치매조기검진: 1,299명 / 치매환자 등록 관리: 954명 / 진단감별검사: 161명·74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24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9종, 1,419건, 206명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발급 31명/ 지문등록: 44명 / 배회감지기: 14건 - 경증치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73회 410명 -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22회 143명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3,322명 -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하성면 전류리 ·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치매친화적 환경조성(경로당 곰팡이 제거 및 도배 시공, 치매예방 생활수칙 알림판 설치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168,948	163,749	-	5,199	
2021	205,004	197,252	-	7,752	
2022	200,096	153,123	-	46,923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치매관리팀장 신수정	담당자	의료기술9급 최정인	전화	4212
-----	-------	------------	-----	------------	----	------

북부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방문건강관리)

사업기간	2023. 1. 1. ~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1,000가구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1항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제5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7,500	45,900	45,900	0	39,000	-6,900	
국비	18,750	22,950	22,950	0	19,500	-3,450	
도비	0	0	0	0	0	0	
시비	18,750	22,950	22,950	0	19,500	-3,45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9,000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 사무용품, 피복비 등 구입: 300,000원*5회 = 1,500 · 방문사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1,200원*9,000개 = 10,800		12,300
	201-02 공공운영비	◎비대면 방문 대상자 관리 · 핸드폰 요금 75,000원*12월 = 900 ◎테블릿 PC 데이터 사용료 · 테블릿 PC 6대*26,000원*12월 = 1,872		2,772
	301-14 기타보상금	◎허약 및 독거노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 프로그램 강사비: 80,000원*2회*20개소 = 3,200		3,200
	307-01 의료및구료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지원품 구입 · 영양제 등 2종: 8,500원*300명*4회 = 10,200 · 외용 소염진통제: 2,100원*750명*4회 = 6,300 · 특수영양식이: 27,000원*150명 = 4,050 · KF94마스크: 178원*1,000명 = 178		20,72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057(2022.10.28.)호 관련, 2023년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전달체계 사업 가내시
- 북부권 의료취약계층 및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건강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발굴 및 등록관리, 기초 건강 및 만성질환, 폭염·한파 대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소생활권 주민 건강 돌봄 및 재가암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재난 대비(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건강관리, 지역의 보건·복지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3. 1. ~ 2023.12. : 분기별 건강관리 물품구입 및 대상자 발굴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2023.10. : 시군 종합평가
 - 2023.11. ~ 2023.12. : 방문보건사업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2,126가구/13,245건, 자원연계 1,593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1,355명(8,366건)
2021	-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2,098가구/5,936건, 자원연계 1,928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2,568명
2022	- 방문등록가구/ 서비스 건 2,083가구/5,520건, 자원연계 1,052건, 의료용품 지원자수 1,286명, 인하대병원 의료봉사 지원 5회 189명, 폭염 및 한파 등 관리 22,913명, 허약노인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323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7,200	37,197	-	3	
2021	37,500	37,499	-	1	
2022	45,900	40,840	-	5,060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7급 김향숙	전화	4202
-----	-------	------------	-----	----------	----	------

북부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기간	2023. 1. 1~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북부 5개 읍·면 30세 이상 주민, 장애인		
사업목적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예방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행태 및 인식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6,460	53,400	53,400	0	52,624	-776	
국비	18,230	26,700	26,700	0	26,312	-388	
도비	0	0	0	0	0	0	
시비	18,230	26,700	26,700	0	26,312	-388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52,624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5,000원*3,600개 = 18,000 (교육책자, 건강수첩, 현수막 등) ·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20,000원*10명*10회*2개소 = 4,000 · 사업 홍보물 등 제작: 5,000원*2,000개 = 10,000		32,0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북부권 어린이집 인식개선 인형극: 500,000원*2회 = 1,000		1,000
	301-14 기타보상금	◎경로당 강사비 · 프로그램 강사비: 80,000원*10회*2개소 = 1,600		1,600
	307-01 의료및구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검사 소모품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검사용품 등 : 10,000원*300명 = 3,000 · 심뇌혈관질환 관리 검사용품 등 : 2,900원*2,500명 = 7,250		10,25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의료지원품 · 외용 소염진통제 : 3,000원 * 600명*4회 = 7,200		7,20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 영양제 등 : 5,740원*100명 = 574		574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편성된 사업 중 아래 2개 사업으로 구성됨

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병 교실(경로당 등):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검사, 교육, 상담 등
-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가관리: 혈압·혈당 기기 대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홍보: 캠페인, 현수막, 책자 등

②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장애인 발견 및 등록 관리 / 사회참여 증진 재활 프로그램(작품 공예)
- 북부권 어린이집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방문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및 재가 장애인: 건강생활팀 재활치료실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2. : 사업계획서 수립
- 2023. 1. ~ 2023. 3. : 사업 대상 선정 및 강사 채용 등
- 2023. 3. ~ 2023.12. : 각 분야 별 물품구입 및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 2023.11. ~ 2023.12. :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및 재활사업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고혈압·당뇨 관련 교육(이동교실, 표준화사업): 57회 87명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장애인 등록가구: 621명 / 3,542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6회/81명
2021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고혈압·당뇨 관련 교육(이동교실, 표준화사업): 60회 144명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장애인 등록가구 584명 / 1,576건 재활프로그램 운영: 20회/67명
2022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고혈압·자가관리 프로그램 5회 56명, 경기도 당뇨병 자가관리 상담 프로그램 10회 52명,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문자서비스 7,416건, 혈압·혈당기 대여서비스 221명/215명 (실인원: 38명/35명) - 지역사회재활관리사업: 장애인 등록가구/서비스: 558명 / 1,346건, 재활프로그램(발관리) 운영: 17회/18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5,310	35,299	-	11	
2021	36,460	36,459	-	1	
2022	53,400	36,331	-	17,069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7급 김향숙	전화	4202
-----	-------	------------	-----	----------	----	------

북부권 암환자 지원사업(재가암환자관리)

사업기간	2023. 1. 1~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212가구		
사업목적	재가암 환자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항,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호
	법령 위임규정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3,748	3,748	3,748	0	3,748	0	
국비	1,874	1,874	1,874	0	1,874	0	
도비	0	0	0	0	0	0	
시비	1,874	1,874	1,874	0	1,874	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3,748	
암환자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재가암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100,000원*2회(상·하반기) · 프로그램 운영비: 30,000원*10명*2회	= 200 = 600	800
	307-01 의료및구료비	◎재가암환자 의료지원품 구입 · 특수 영양식이: 35,800원*15명*4회 · 영양제: 10,000원*20명*4회	= 2,148 = 800	2,948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재가암환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용품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내용: 재가 암환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기초건강관리 및 삼라자와 상담 의료물품(특수영양식이 등) 지급 지역의 보건복지 자원 연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3. 1. ~ 2023.12. : 재가암환자 발견 및 등록, 방문서비스 제공
- 2023. 3. ~ 2023. 6. : 분기별 암환자 의료지원물품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 / 서비스 건 / 의료용품 지급: 208명/1,329/285건
2021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 / 서비스 건 / 의료용품 지급: 211명/661건/100명
2022	- 재가암 환자 등록자 수 / 서비스 건 / 의료용품 지급: 211명/508건/128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3,748	3,745	-	3	
2021	3,748	3,747	-	1	
2022	3,748	3,747	-	1	10.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7급 김향숙	전화	4202
-----	-------	--------	-----	-----	----------	----	------

방문건강관리사업(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2023. 1. 1~ 2023. 12. 31	사업위치	통진읍 마송리 526, 527번지
사업규모	60명		
사업목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 능력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제1항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항 제5호
		제5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최종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본예산요구액 (D)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D-B)	비고
		최종예산액 (A=B+C)	본예산 (B)	1~2회추경 (C)			
계	0	0	0	0	15,000	15,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7,500	7,50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7,500	7,5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AI-IoT 활동량계 및 홍보물제작 등 · 활동량계 : 60,000원*60명 = 3,600 · 홍보물제작 등 : 11,400,000원 = 11,400		15,000

□ 예산요구(증·감) 사유 및 사업내용

- 경기도 건강증진과-17057(2022.10.28.)호 관련, 2023년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전달체계 사업 가내시
- 2022년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김포시 예산 보건사업과에서 사업 예산 집행함
- 사업대상: 독거 어르신,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어르신, 식생활, 신체활동, 투약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 사업주기: 6개월 주기로 서비스 참여하게 되나 원하면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함
- 사업내용: 개인 미션 부여, 비대면 건강컨설팅, 스마트 기기 디바이스(5종) 제공, 모니터링 및 지지 메시지, 건강실천 교육자료 제공 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2.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1. ~ 2023. 3. : 사업계획서 수립
- 2023. 1. ~ 2023.12. : 홍보물 및 사업용 물품제작 / AI-IoT 대상자 발굴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2023.10. : 시·군 종합평가
- 2023.11. ~ 2023.12. : 방문보건사업 경기도 및 정부합동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2. 10.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0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2	- 2022년 6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작 - AI-IoT 어르신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건강체크, 기기 사용법, 물품 배부 및 수리 등): 47명 / 953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0	-	-	-	-	
2021	-	-	-	-	
2022	-	-	-	-	10.31.기준 집행현황

*2022년 시범사업으로 예산 미편성(보건사업과 일괄 예산 집행)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북부보건과	방문보건팀장	고종중	담당자	간호7급 김향숙	전화	4202
-----	-------	--------	-----	-----	----------	----	------